

#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3월 5일

비씨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원석



#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04
2. 이사회	07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2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48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85
6. 감사위원회	90
7. 리스크관리위원회	102
8. 경영위원회	110
9. 경영관리협의회	112
10. 리스크관리협의회	113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14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15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상위원회	116
2. 보수체계	125
[첨부] 관련 규정	
1. 정관	133
2. 이사회 규정	149
3. 지배구조 내부규범	157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172
5. 감사위원회 규정	174
6.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181
7. 보상위원회 규정	185
8.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188
9. 경영위원회 규정	191
10.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194



#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1. 지배구조 일반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현재 이사회는 총 7인 중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를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www.bccar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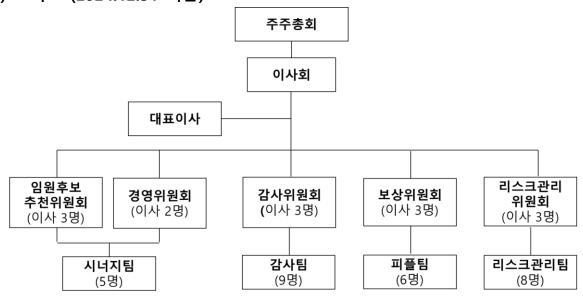


(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 : gongsi.crefia.or.kr )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수정·보완합니다.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2024.12.31 기준)



## ※ 이사회內위원회 구성

구분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0 명	2 명	1 명
감사위원회	0 명	3 명	0 명
보상위원회	0 명	2 명	1 명
리스크관리위원회	0 명	3 명	0 명
경영위원회	1 명	0 명	1 명

<sup>\*</sup> 내부통제위원회(사외이사 3 명)는 2025 년 3 월에 신설(관련 내규 제·개정: '25.3.12 / 위원회 구성: '25.3.28)

##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은 4명,5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여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이사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3) 지배구조 현황(요약)

		구성	의장	
내부기관	주요 역할	(사외이사수/	(성명/상임·사외	관련규정
		구성원수)	·비상임 여부)	
이지침	최고상설	4.77	*1014/1111	저고 이 나하 그저
이사회	의사결정기구	4/7	】 최원석(사내)	정관,이사회 규정
임원후보	임원(사외이사,			정관,이사회 규정,
	대표이사,감사위원)	2/3	조경엽(사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			규정
가니이이쉬	iii ii	2 /2	바스에/사이	정관,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3/3	박순애(사외)	감사위원회 규정
ㅂ사이이취	경영진 보상체계	2./2	기비즈/니이	정관,이사회 규정,
보상위원회 	수립 및 평가 등	2/3	김범준(사외)	보상위원회 규정
	기사그리기 전체			정관,이사회 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정책	3/3	이해선(사외)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전략 승인			규정
거여이이히	피베이 서이 웨이 드	0.72	*1014/1111	정관,이사회 규정,
경영위원회 	지배인 선임·해임 등	0/2	최원석(사내)	경영위원회 규정

<sup>\*</sup> 내부통제위원회(사외이사 3 명)는 2025 년 3 월에 신설(관련 내규 제·개정: '25.3.12 / 위원회 구성: '25.3.28)

## 다. 관련 규정

첨부 1. 정관

첨부 2. 이사회 규정

첨부 3. 지배구조 내부규범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 5.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 6.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첨부 7. 보상위원회 규정

첨부 8.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첨부 9. 경영위원회 규정

첨부 10.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 2. 이사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 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2024 년 총 11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38 건의 의결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고, 37 건의 안건을 보고 받아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정관 제 31 조 2, 이사회 규정 제 6 조) 구체적인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최종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년 경영목표·전략은 2024 년 12 월에 경영진이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25 년 2 월 12 일에 개최된 제 1 차 이사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연중 2025 년 경영계획 및 목표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나) 정관 변경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사회 규정 제 6 조)

가장 최근의 정관 변경(안)은 2024년 3월에 개최된 제 3차 이사회 및 제 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정관 변경 내용
- 제 10 조 :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 삭제
- 제 10 조 2 : 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 제 10 조 3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등배당 규정 신설
- 제 31 조 2 : 임원 보수는 보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이사회 의결 내규 삭제
- 제 45 조 : 중간배당의 기준일 변경 및 유연화
- \* 변경 사유
- 상법 개정(제 350 조 3 항 삭제)에 따른 동등배당 관련 조문 신설 및 관련 조문 현행화
- 이사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 변경
- 중간배당 대상 주주, 기준일, 공고 등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변경

##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 규정 제 6 조).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년 예산에 대해 2025 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2025 년 2월 12일에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이사회에 상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가 초안을 마련하고,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2025 년 3 월 중 개최될 제 42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재무제표 등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2025년 3월 중 공시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해산, 영업양도·양수,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정관 제 31 조의 2, 이사회 규정 제 6 조)

2024 년에는 해산, 영업양도·양수,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법령 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절차 등을 기재한 "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 규정 제 6 조)

당사 내부통제규정은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 회사(임직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통제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내규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7조, 이사회 규정 제 8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리스크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은 동 보고서에 기재된 안건 목록 등 활동내역에 관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제·개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 장, 제 5 장, 이사회 규정 제 6 조)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지배구조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의 수립·평가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계획수립,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후보자 추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6일 제 3차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군 관리' 내용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2025년 2월 12일에 개최된 제 1차 이사회에 보고하여 적정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안)을 2024년 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지배구조법,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상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일상감시제도를 통하여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 기타

기타 당사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에 첨부된 당사의 내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구성(이사)

###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이사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및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규모, 여신전문 금융업의 특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중요사항들을 적절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3 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합니다.

2024 년말 당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로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총 재임기간은 6년 또는 이 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1 조)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소비자보호,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경영분야 전문가이면서 회사의 사장으로 재임 중인 최원석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24년 3월 재선임되었습니다.

#### 2) 구성원



## 가) 이사회 의장 최원석

- 직위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의장

- 임기 : 2021.03.25 ~ 2025 년 정기주주총회일<sup>주)</sup> (2024.03.29 재선임)

- 경력

\* (現) 비씨카드㈜ 대표이사 (2021.03 ~)

\*(前) ㈜에프앤자산평가 대표이사 (2011.06 ~ 2021.02)

\*(前)㈜에프앤가이드 전무, 금융공학연구소장 (2000.07 ~ 2011.05)

주) 비씨카드 정관 제 25 조 3 항에 의거하여 이사임기가 재임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함

### 나) 사외이사 이해선

- 직위 : 선임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임기 : 2023.03.31 ~2025 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現)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2024.02 ~)

\*(前)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2023.09 ~ 2023.12)

\* (前) SM 상선㈜ 상근감사 (2021.04 ~ 2023.08)

\*(前) 한국금융연수원 전문자문교수 (2020.03 ~ 2021.02)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2015.05 ~ 2018.12)

## 다) 사외이사 조경엽

- 직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임기 : 2023.03.31 ~2025 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 (現)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006.03~)

\*(前)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2004.06 ~ 2006.02)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997.07 ~ 2004.05)

#### 라) 사외이사 박순애

- 직위 :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임기 : 2024.04.01 ~ 2026 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 \* (現)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04.08~)
- \*(現)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2021.07~)
- \*(前)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2.07 ~ 2022.08)
- \*(前) 한국행정학회 제 56 대 회장 (2021.01 ~ 2021.12)
- 주) 박순애 사외이사는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24.3.29)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조건부로 선임되었으며, 임기 시작일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일인 2024년 4월 1일

## 마) 사외이사 김범준

- 직위 :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임기: 2024.03.29~2026 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 \* (現)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학과장) (2015.03~)
- \*(前)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과 겸직교수 (2021.08 ~ 2023.12)
- \*(前)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2008.03 ~ 2010.02)

### 바) 사외이사 서동규(임기 만료)

- 임기: 2022.03.29~2024 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 \* (現) ㈜신도리코 대표이사 (2024.03 ~)
- \*(前) 스틱인베스트먼트㈜ 시니어파트너 (2022.01~2023.12)
- \*(前) 삼일회계법인 (1994. ~ 2021.12)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 사) 사외이사 김재기(임기 만료)

- 임기: 2022.03.29~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 \*(現) 중소기업신문 대표이사 (2022.06~)
- \*(前) 농협중앙회 홍보실장(상무)(2018.01 ~ 2019.12)
- \*(前) 농협은행 인천지역본부장(본부장) (2017.01 ~ 2017.12)

## 아) 기타비상무이사 이현석

- 직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임기: 2024.03.29~2026 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 \* (前) ㈜케이티 Customer 부문장 (2023.12 ~)
- \* (前) ㈜케이티 충남.충북광역본부장 (2021.01 ~ 2023.11)
- \* (前) ㈜케이티 Customer 부문 디바이스사업본부장 (2020.01 ~ 2020.12)

### 자) 기타비상무이사 장민

- 직위 : 보상위원회 위원, 경영위원회 위원
- 임기: 2024.03.29~2026 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 \*(前) ㈜케이티 재무실장 (2023.12~)
  - \* (前)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 (2021.01 ~ 2023.11)
  - \*(前) 비씨카드㈜ 경영기획총괄 (2020.02 ~ 2021.01)

## 차) 기타비상무이사 강국현(임기 만료)

- 임기: 2020.03.25 ~ 2024 년 정기주주총회일 (2022.03.29 재선임)
- 경력
- \* (前) ㈜케이티 Customer 부문장 (2020.12 ~ 2023.09)
- \*(前)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2018.03 ~ 2020.03)
- \*(前)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운영총괄 (2017.12 ~ 2018.03)

## 카) 기타비상무이사 김영우(임기 만료)

- 임기: 2023.05.15~2024 년 정기주주총회일
- 경력
  - \* (前) ㈜케이티 그룹 Transfortmaion 부문 그룹경영실장 (2020.12 ~ 2023.11)
  - \*(前) ㈜케이티 글로벌사업본부장 (2020.01 ~ 2020.12)
  - \*(前)㈜케이티 글로벌사업개발본부장 (2018.11 ~ 2020.01)



# 3) 요약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최원석	사내 이사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위원장	· 現 비씨카드 대표이사 · 前 에프앤자산평가 대표 · 前 에프앤가이드 전무	′21.03.25	'25 년 정기 주총일	45 개월	경영위
이해선	사외 이사	선임 사외이사,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ul> <li>・現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li> <li>・前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li> <li>・前 SM 상선 상근감사</li> <li>・前 한국금융연수원 전문자문교수</li> <li>・前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li> </ul>	′23.03.31	'25 년 정기 주총일	21 개월	리스크 관리위, 임추위, 감사위
조경엽	사외 이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ul> <li>・現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li> <li>・前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li> <li>・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li> </ul>	′23.03.31	'25 년 정기 주총일	21 개월	임추위, 리스크 관리위, 보상위
박순애	사외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	<ul> <li>現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li> <li>교수</li> <li>現유엔 공공행정전문가</li> <li>위원회 위원</li> <li>前사회부총리 겸교육부장관</li> <li>前 한국행정학회 제 56 대회장</li> </ul>	'24.03.29 (임기시작 알.'2441)	'26 년 정기 주총일	9 개월	감사위, 리스크 관리위
김범준	사외 이사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ul> <li>・現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li> <li>・前한국과학기술원(KAIST)</li> <li>경영공학과 겸직교수</li> <li>・前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li> </ul>	′24.03.29	'26 년 정기 주총일	9 개월	보상위, 감사위
서동규	사외 이사	(임기만료)	· 現祭신도리코 대표이사 · 前 스틱인베스트먼트 시니어파트너 ·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22.03.29	'24 년 정기 주총일	24 개월	-



김재기	사외 이사	(임기만료)	<ul><li>現중소기업신문 대표이사</li><li>前 농협중앙회 홍보실장</li><li>前 농협은행 인천지역본부장</li></ul>	'22.03.29	'24 년 정기 주총일	24 개월	-
이현석	기타 비상무 이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現㈜케이티 Customer 부문장 ・前㈜케이티 충남·충북광역 본부장 ・前㈜케이티 Customer 부문 디바이스사업본부장	′24.03.29	'26 년 정기 주총일	9 개월	임추위
장민	기타 비상무 이사	보상위원회 위원 경영위원회 위원	· 現㈜케이티 재무실장 · 前㈜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 · 前비씨카드㈜ 경영기획본부장	'24.03.29	'26 년 정기 주총일	9 개월	보상위 경영위
강국현	기타 비상무 이사	(임기만료)	<ul> <li>前케이티 Customer 부문장</li> <li>前케이티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li> <li>前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운영총괄</li> </ul>	′20.03.25	'24 년 정기 주총일	48 개월	-
김영우	기타 비상무 이사	(임기만료)	<ul> <li>前케이티 그룹 Transformation</li> <li>부문 그룹경영실장</li> <li>前케이티 글로벌사업본부장</li> <li>前케이티 글로벌사업개발</li> <li>본부장</li> </ul>	′23.05.15	'24 년 정기 주총일	10 개월	-

주) 재임기간은 2024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작성

## 다. 활동내역

## 1) 활동내역 개요

2024 년에는 총 11 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6%입니다. 이사회 개최 시 담당부서 임원 혹은 팀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여 이사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간에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고, 그 결과 2024 년 한해 75 건의 보고 및 의결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1) 제 1 차 이사회 : 2024.01.30(화) 15:00~15:35 (안건통지일: 01.26)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 이사 성명	최원석	서동규	김재기	이해선	조경엽	강국현	김영우	
2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 4 분기 결산보고				이의 입	었음			
	나. 2023 년 전문임원 운영				Olol C	но			
	현황 보고				이의 읍				
	다. 제 2023-5 차 보상위원회				0101.0	40			
	개최 결과 보고				이의 입	있음			
	라. 제 2023-2,3 차 임원후보	UIOI 어으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이의 없음							
	마. 2023 년 준법감시 활동				Olol C	40			
	결과 및 2024 년 계획 보고				이의 입	()음			
	바. 2023 년 자금세탁방지				Olol C	40			
	업무 감사 실시 결과 보고				이의 입	()음			
4	. 의결안건								
	가. 2024 년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나. 보상위원회 규정	<b>*</b> LV-1	<b>★</b> L.\-1	<b>★</b> ↓↓↓	<b>*</b> LV-1	<b>★</b> ↓↓↓	<b>*</b> LV4	<b>*</b> L14	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
	다. 제 2024-1 차 주요주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등과의 거래(안)	신경	신경	신경	신경	신경	신경	신경	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1 호)에 의거, 2023 년 4 분기 결산 및 주요 경영실적 보고나)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4 호)에 의거, 2023 년 전문임원 운영현황 보고다)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3-5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라)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3-2 차,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마) 준법감시 규정(제3조 제1항 제9호)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규정(5조) 등에 의거, 2023년 준법감시 활동결과 및 2024년 계획 보고

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제 12,14,16 조)에 의거, 2023 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 실시 결과 보고

## [의결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5,6 호)에 의거, 2024 년도 경영계획 승인 나)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2 조)에 의거, 보상위원회 규정 개정

다) 상법(제 398 조) 및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19 호)에 의거, 제 2024-1 차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대상: 비씨카드베트남)

## 나) 제 2 차 이사회: 2024.02.15(목) 15:00~15:40 (안건통지일: 2024.02.07)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 이사 성명	최원석	서동규	김재기	이해선	조경엽	강국현	김영우	
2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일신상 의 사유)	참석	
3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1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읍	었음			
	나. 제 2024-1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다. 2023 년도 감사결과				이의 입				
4	. 의결안건								
	가. 제 41 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 결
	나. 제 41 기 영업보고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 결
	다. 사채 연간 발행한도 설정 및 일괄신고서 제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 결



라. 2024 년 산업안전보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추진 계획(안)	건경	선경	건경	연6	건'6	-	20	결
마. 자금세탁방지제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운영규정 개정(안)	건'0	건'0	건'0	ଅଟ	건'0	1	선경	결
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찬성	찬성	+1.1-1	+1.4-	+144		+1 14	가
개정(안)	건경	건경	찬성	찬성	찬성	1	찬성	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1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나)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1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다) 감사위원회 규정(제 7 조 제 1 항)에 의거, 2023 년도 감사결과 보고

## [의결 안건]

- 가) 제 41 기(23.01.01~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에 대해 이사회 승인 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나) 회사의 2023 년도 현황,경영,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승인 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다) 운영자금의 적기 조달을 통한 자금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24 년 사채 연간 발행한도 설정 및일괄신고서 제출
- 라)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행을 위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 추진 계획 수립
- 마) 관계 법령 개정 내용 반영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규정 최신화
- 바)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 다) 제 3 차 이사회 : 2024.03.05(화) 15:00~15:30 (안건통지일: 2024.02.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원석	서동규	김재기	이해선	조경엽	강국현	김영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 이사회 등 평가 결과	이의 없음							



	나. 제 2024-1 차 임원후보				0101.0	10		이의 없음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1									
	다. 2023 년 내부회계관리				이의 입	10								
	제도 운영실태 보고				이 <u>의</u> i	<del>Д</del>								
	라. 2023 년 내부회계관리				이의 입	10								
	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이의 비	石								
	마. 제 2024-2 차 감사위원회				AIAI 0	40								
	개최 결과				이의 입	<del>Д</del>								
	바. 2023 년 내부통제 체계·				OLOL O	40								
	운영실태 점검 결과				이의 입	<del>Д</del>								
	사. 2023 년 하반기 자금세탁				OLOL O	40								
	방지제도 운영 결과				이의 입	<del>i i</del>								
	아. 2023 년 금융소비자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	이의 없음												
	점검 결과													
	자. 2024 년 금융소비자보호				OLOL O	10								
	이행도 평가 운영(안)				이의 입	<del>Д</del>								
4	. 의결안건													
	가. 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나. 2024 년 이사 보수 한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사	찬성	가					
	승인(안)	ଅଟ	선경	선경	선경	건'0	찬성	선정	결					
	다. 이사회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라. 정관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마.㈜케이뱅크와의 2024 년													
	2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한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설정(안)								2					
	바.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	<b>*LV-</b>	<b>★</b> L从-1	<b>★</b> L从-1	<b>★</b> ↓从-1	<b>★</b> L从-1	<b>★</b> L从-1	<b></b> ‡L从	가					
	소집(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 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제 15 조 등)에 의거, 2023 년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나)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8 조 제 4 항), 내부회계관리 규정(제 15 조 제 3 항)에 의거, 2023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8 조 제 5 항)에 의거, 2023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마)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2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 11 조 제 5 항)에 의거, 2023 년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거, 2023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운영 결과 보고
- 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제 24조 1,4,5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제 6조)에 의거,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 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제 7 조 2 항, 제 24 조 4 항)에 의거, 2024 년 금융소비자보호 이행도(KPI) 평가운영(안) 보고

## [의결 안건]

- 가)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이현석, 장민) 추천
- 나)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2024 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20 억원)
-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준에 의거하여 의결사항 구체화 및 실무 기준 현행화 개선
- 라) 동등배당 관련 조문 신설 및 조문 현행화, 이사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 변경,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변경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
- 마) ㈜케이뱅크와의 펌뱅킹 이용을 위한 보통예금 입출금거래 한도 설정('24년 2분기)
- 바)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2024.3.29(금) 오전 10 시 / 보고 3 건, 의결 6 건)

#### 라) 제 4 차 이사회 : 2024.03.29(금) 16:30~17:15 (안건통지일: 2024.03.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	----------	----



							여부	
1. 이사 성명	최원석	이해선	조경엽	김범준	이현석	장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2 차 보상위원회				이의 없음				
개최 결과	이의 ᆹᆷ							
나. 제 2024-3 차 감사위원회				이의 없음				
개최 결과				이의 따금				
다. 제 2023-10 차, 제 2024-								
1,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의 없음							
개최 결과								
라. 2024 년 개인신용정보의		이의 없음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 결과				이그 따급				
4.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사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의장 및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선임(안)	10	10	10	10	10	10	\12	
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	10	10	10	1.0	1.0	10	712	
라. 제 2024-2 차 주요주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등과의 거래(안)	120	'L' O	'L' O	.i.o	.Ľ O	ii o	112	
마. 사외이사 보수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4 년 사내근로복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기금 출연(안)	L'O	'L' O	L'O	i i o	L'O	i i o	112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2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나)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3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다)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3-10 차, 제 2024-1,2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0조 제 6항) 및 동법 시행령(제 17조 제 8항)에 의거, 2024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 [의결 안건]

- 가) 대표이사 사장 선임(최원석 이사)
- 나) 이사회 의장(최원석 대표이사) 및 선임사외이사(이해선 사외이사) 선임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
- 라) 상법(제 398 조) 및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19 호)에 의거, 제 2024-2 차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대상: 비씨전략투자조합 2 호, ㈜케이티, ㈜케이티스포츠)
- 마) 정관(제 35 조) 및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사외이사 보수 변경
- 바) 근로복지기본법(제 61 조) 및 이사회 규정(제 6조 제 1항 제 20호)에 의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13억원)

## 마) 제 5 차 이사회: 2024.05.08(수) 09:00~09:33 (안건통지일: 2024.04.29)

	,							- /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 이사 성명	최원석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이현석	장민		
2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1 분기 결산 보고				이의 압	었음				
	나. 제 2024-3 차 보상위원회		이의 없음							
	개최 결과	1–1 80								
	다. 제 2024-2 차 임원후보		이의 없음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VI <u>⊸</u> I B	V				
	라. 제 2024-3 차 리스크관리				이의 읍	H으				
	위원회 개최 결과				어크 #					
	마. 제 2024-4차 감사위원회				이의 입	H으				
	개최 결과				이그 비	V <u>—</u>				
4	. 의결안건									
	가. 케이티텔레캅㈜와의								71	
	2023 년 체결 대규모 내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거래 변경(안)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1 호)에 의거, 2024 년 1 분기 결산 보고 나)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3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다)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라)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마)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4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의결 안건]

가) 케이티텔레캅㈜과 '23년 기 체결한 할부채권 팩토링 거래 금액 변경 시행

## 사) 제 6 차 이사회 : 2024.06.26(수) 15:00~15:20 (안건통지일: 2024.06.19)

•	/ ·    O ·   ·   ·   —  · LOL 1.00	.5.00		,	1 =	JJJ.	,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 이사 성명	최원석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이현석	장민	
2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3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4 차 보상위원회		이의 없음						
	개최 결과				이의 1	<del>, </del>			
4	. 의결안건								
	가.㈜케이뱅크와의 2024 년								-
	3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 결
	한도 설정(안)								
	나.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기부금 출연(안)	건경	신경	건경	건경	신경	건경	-	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조 제 2항 제 2호)에 의거, 제 2024-4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의결 안건]

가) ㈜케이뱅크와의 펌뱅킹 이용을 위한 보통예금 입출금거래 한도 설정(24년 3분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 67 조 등)에 의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분담 출연

## 사) 제 7 차 이사회 : 2024.07.23(화) 09:40~10:40 (안건통지일: 2024.07.1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0	사 성명	최원석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이현석	장민	
2. 참	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	고안건에 대한 의견								
기	h. 2024 년 상반기 결산				Olol C	но			
보	고			이의 읍	<del>, </del>				
나	·.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	l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이의 없음							
보	고								
다	·. 제 2024-5 차 감사위원회				OLOL C	но			
개최 결과					이의 읍	V <del>.</del>			
4. 의	  결안건								
기	ł.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사사	사사	사사	차서	사사	사사	사사	가
공	·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2024 년 상반기 결산 보고

나)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6 호)에 의거, 페이북 성능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추진 현황 보고

다) 이사회 규정(제 6조 제 2항 제 2호)에 의거, 제 2024-5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의결 안건]



##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공여(㈜케이티와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

## 아) 제 8 차 이사회: 2024.09.11(수) 09:00~09:23 (안건통지일: 2024.09.0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 이사 성명	최원석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이현석	장민				
2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3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5 차 리스크관리 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나. 2024 년 상반기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영 결과											
	다. 자금세탁 위험관리 체계 운영 현황	이의 없음										
4	. 의결안건											
	가. ㈜케이뱅크와의 2024 년 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 결			
	나. ㈜케이티엔지니어링과 의 2023 년 체결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 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5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 등에 의거, 2024 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 운영 결과 보고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 11 조 제 2 항 제 6 호) 등에 의거,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 운영 현황 보고



## [의결 안건]

가) ㈜케이뱅크와의 펌뱅킹 이용을 위한 보통예금 입출금거래 한도 설정('24년 4분기) 나) ㈜케이티엔지니어링과 2023년 기 체결한 할부채권 팩토링 거래 금액 변경 시행

## 자) 제 9 차 이사회: 2024.10.08(화) 14:00~14:20 (안건통지일: 2024.10.0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최원석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이현석	장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채무조정 내부규정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 안건]

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무조정 내부규정 제정

## 차) 제 10 차 이사회 : 2024.11.14(목) 10:00~10:35 (안건통지일: 2024.11.06)

	1,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 이사 성명	최원석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이현석	장민		
2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3 분기 결산 보고		이의 없음							
2	I. 의결안건									
	가. 제 2024-3 차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공여 증액(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1 호)에 의거, 2024 년 3 분기 결산 보고

## [의결 안건]

가) 상법(제 398 조) 및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19 호)에 의거, 제 2024-3 차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대상 : ㈜케이티)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공여 증액(㈜케이티와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

## 카) 제 11 차 이사회 : 2024.12.16(월) 16:30~17:30 (안건통지일: 2024.12.11)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원석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이현석	장민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5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나. 제 2024-6차 리스크관리 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조직개선(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나.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다. 준법감시인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라. 2025 년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마.㈜케이뱅크와의 2025 년 1 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 결



| 바. 2025 년 1 분기 을지사옥<br>임대(안)  | 찬성 | 가<br>결 |
|-------------------------------|----|----|----|----|----|----|----|--------|
| 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br>대한 신용한도공여(안) | 찬성 | 가<br>결 |
| 아. 대구지점 폐지(안)                 | 찬성 | 가<br>결 |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 가)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5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나)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제 2024-6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의결 안건]

- 가) 본부급 이상 조직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조직개선(안) 의결
-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8 조 제 1 항) 및 정관(제 28 조 제 3 항)에 의거,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25조 제 2,3,4항)에 의거, 준법감시인 임면
- 라) 상법(제 398 조) 및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19 호)에 의거, 2025 년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
- 마) ㈜케이뱅크와의 펌뱅킹 이용을 위한 보통예금 입출금거래 한도 설정(25년 1분기)
- 바)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10 호)에 의거, 2025 년 1 분기 을지사옥 임대(안) 승인
- 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한도공여 증액(㈜케이티엠앤에스와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
- 아) 이사회 규정(제 6 조 제 1 항 제 21 호)에 의거, 대구지점 폐지(안) 승인

## 라.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연차보고서 공시일 전까지 전년도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평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은 제 2023-4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사회 등 평가기준"에 따라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며, 정기주주총회 20 일전까지 사외이사 평가와 함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합니다.

2024 년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2025 년 1~2 월에 온라인/비대면 설문조사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 2025-1 차 이사회에 보고된 2024 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체	점수	평가
이사회	4.83	우수(S)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57	우수(S)
감사위원회	4.94	우수(S)
리스크관리위원회	5.00	우수(S)
보상위원회	4.89	우수(S)

<sup>\* [</sup>평가등급] 4점이상:우수(S), 3점이상:양호(A), 2점이상:보통(B), 2점미만:미흡(C)

####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내이사는 상임 임원으로서 별도의 경영진 성과 평가 및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참조)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평가(본인평가, 동료평가)와 임원평가(관련 본부장, 준법



감시인)로 구분되며 크게 전문성, 참여도, 윤리성/충실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설문 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 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본 보고서의 '사외이사 평가'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지배구조법 제 13조 제 2 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의장으로 최원석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근직으로 금융 및 카드 본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2024년 3월 29일에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이해선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現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 2 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관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2 명을 포함한 총 3 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규정 제 2 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의 임원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동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후보 선정,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공감 및 전략 수행 능력 보유
- 금융회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 보유
-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 이익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경영

2024 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 회 개최하였습니다.



2024 년 3 월 5 일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내용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박순애, 김범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경엽 위원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4 년 12 월 16 일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과 후보군 관리에 관한 내용 및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내용을 의결하고, 현 대표이사 최원석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1 명의 기타비상무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7%로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식위 능		임기만료일
조경엽	사외이사	위원장	′23.03.31	′25 년
708	, गुन्म जारग	1120	23.03.31	정기주주총회일
이해선	11010111	위원	/22 02 21	′25 년
이에진	사외이사 	기권 	′23.03.31	정기주주총회일
이성서	비사이	위원	/24.02.20	′26 년
이현석	비상임	기건	′24.03.29	정기주주총회일

#### 다. 선임기준

#### 1) 후보 자격요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의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 제 5 조제 2 항)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제 5 조 동법 시행령 제 7 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에 부합하고, 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전문성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7 조)

- 사외이사는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 후보는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그 외 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6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와 제 7조(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합니다.

####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후보 추천과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는 임원 후보군 탐색·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임원 후보군 관리 및 최종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에 대한 안건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에 후보 선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후보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을 결의합니다.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각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년도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매년 초 연 1회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구분은 이사평가(본인평가, 동료평가)와 임원평가(관련 본부장, 준법 감시인)로 구분됩니다. 평가는 전문성, 참여도, 윤리성/충실성 3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4 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 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의결 안건은 총 6 건이었으며, 6 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4 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년 3 월 5 일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내용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박순애, 김범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경엽 위원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4 년 12 월 16 일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과 후보군 관리에 관한 내용 및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내용을 의결하고, 현 대표이사 최원석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03.05(화) 14:30~14:40 (안건통지일: 2.29)

항목	이시	∤별 활동L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경엽	서동규	강국현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b>+</b> L ↓ →	<b>+</b> L ↓ →	<b>+</b> L ↓ -	71 73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 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총 12 인)을 승인

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박순애, 김범준) 추천

## 나)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03.29(금) 17:40~17:45 (안건통지일: 3.26)

항목	이시	나별 활동L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경엽	이해선	이현석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 안건]

가) 조경엽 위원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다)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12.16(월) 16:00~16:15 (안건통지일: 12.11)

		=	=	<u> </u>
항목	이시	ŀ별 활동L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경엽	이해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및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후보군 관리(안)	신경	건 (7)	신경	기열
나. 대표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 안건]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에 대한 계획을 의결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총 5 인)을 승인
- 나) 주주총회에 최원석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
- 다) 사외이사 후보군(총 23 인)을 승인

### 3) 평가

당사는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매년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평가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주주총회 20일 전까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위원회 효율적 진행,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이 있으며 2024년 평가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평균득점 4.57 점으로 우수(S)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1) 대표이사 후보

###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최원석

(2) 출생연도: 1963년

(3)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4) 경력

· 2021.03~ 비씨카드㈜ 대표이사 사장

· 2011.06. 에프앤자산평가 대표이사 사장

· 2000.07. 에프앤가이드 전무, 금융공학연구소장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에서 규정하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 보유
- ·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



- ·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자
- ·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보유

지난 4 년간 비씨카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환경 및 AI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매입사업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혁신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자체사업(카드,금융, 페이북,데이터 등)을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는 등 뛰어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로 비씨카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2) 후보자 추천 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하여 당사 내부규정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라) 자격충족 여부

# (1) 소극적 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후보로서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비씨카드가 정한 자격요건

#### - 자격요건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외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 제 5 조에 근거하여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평가

후보자는 비씨카드 대표이사 후보로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회사 내 주요사업에 대한 높은 업무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비씨카드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환경 및 AI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매입사업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혁신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자체사업(카드,금융,페이북,데이터 등)을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는 등 뛰어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3) 본인 소명

당사는 최원석 후보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임원 자격요건에 대해 본인 소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최원석 후보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추천을 위해 2024년 12월 16일 제 3차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원석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 2) 대표집행임원 후보

당사는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감사위원 후보

### 가-1) 후보자 인적사항 - 박순애 사외이사

(1) 성명: 박순애

(2) 출생연도: 1965년

(3) 출신학교 : 연세대학교

# (4) 경력

- · 2004.0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21.07~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 · 2022.07~08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2021.01~12 한국행정학회 제 56 대 회장



### 나-1)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다-1) 후보자 추천 사유

###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순애 이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신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사외이사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위원이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2) 후보자 추천 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당사 내부규정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라-1) 자격충족 여부

### (1) 소극적 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후보로서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비씨카드가 정한 자격요건

#### - 자격요건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외에 감사위원회 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통한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 평가

박순애 감사위원 후보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내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 전문성

박순애 감사위원 후보자는 환경계획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및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감사위원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 윤리성, 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 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감사위원 후보자는 現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現유엔 공공행정전문가 위원회 위원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감사위원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월 평균 약 2회), 의안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 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본인 소명



당사는 박순애 감사위원 후보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임원 자격요건에 대해 본인 소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마-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박순애 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주) 박순애 감사위원 후보자는 공직자 윤리법 제 17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박순애)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조건부로 선임 결의 되었습니다. (임기 시작일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일인 2024년 4월 1일)

## 가-2) 후보자 인적사항 - 김범준 사외이사

(1) 성명 : 김범준

(2) 출생연도: 1973년

(3) 출신학교: 서울대학교

(4) 경력

· 2015.03~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학과장)

- ·2021.08~2023.12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과 겸직교수
- · 2008.03~2010.02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나-2)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다-2)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범준 이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학과장)로 재직 중인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사외이사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2) 후보자 추천 경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당사 내부규정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라-2) 자격충족 여부

### (1) 소극적 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후보로서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비씨카드가 정한 자격요건

#### - 자격요건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외에 감사위원회 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통한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 평가

김범준 감사위원 후보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내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 전문성

김범준 감사위원 후보자는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학과장)로 재직 중인 재무·회계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감사위원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사위원이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 윤리성, 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감사위원 후보자는 現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現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실무위원회 위원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감사위원 후보자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월 평균 약 2회), 의안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본인 소명

당사는 김범준 감사위원 후보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임원 자격요건에 대해 본인 소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마-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김범준 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 4) 사외이사 후보

2024 년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없었습니다.

**가) ~ 아)** : 해당사항 없음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군 발굴 시 주주 및 외부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됩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추천 받은 후보군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 년 3 월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12 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2024 년 12 월에 개최된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3 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승인하였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 - 심의일자 : 2024 년 12 월 16 일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5	21.7%	
IT	3	13.0%	



리스크관리/경제	4	17.4%	
경영	4	17.4%	
법률	3	13.0%	
재무·회계	4	17.4%	
합계	23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사	2	8.7%	
외부전문기관	17	73.9%	
내부탐색	4	17.4%	
합계	23	100.0%	

# 자)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24년 3월 5일에 개최된 제 2024-3차 이사회 및 2025년 2월 12일 개최한 제 2025-1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각각 제 2024-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2024-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받은 후보군 현황과 동일합니다.

이사회 보고일자	사외이사 후보군 수	비고	
레 2024 2 번 이 나를(2024 02.05)	12	제 2024-1 차 임추위에서	
제 2024-3 차 이사회(2024.03.05)	12	의결받은 사외이사 후보군	
제 202F 4	22	제 2024-3 차 임추위에서	
제 2025-1 차 이사회(2025.02.12)	23	의결받은 사외이사 후보군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경영기획본부 내 시너지팀으로 총 인원은 5명입니다.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 내용
2024.03.05	제 2024-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안)
2024.12.16	제 2024-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안)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 가) 이사회

# (1) 제 1 차 이사회 : 2024.01.30(화) 15:00~15:35 (안건통지일: 01.26)

	항목		이사별 3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 이사 성명	서동규	김재기	이해선	조경엽	
2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1)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 4 분기 결산보고			이의 없음		
	나. 2023 년 전문임원 운영			이의 없음		
	현황 보고	이의 ᆹᆷ				
	다. 제 2023-5 차 보상위원회	이의 없음				
	개최 결과 보고	이의 따금				
	라. 제 2023-2,3 차 임원후보			이의 없음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마. 2023 년 준법감시 활동			이의 없음		
	결과 및 2024 년 계획 보고					
	바. 2023 년 자금세탁방지			이의 없음		
	업무 감사 실시 결과 보고					
4	l. 의결안건					
	가. 2024 년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보상위원회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2024-1 차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 제 2 차 이사회 : 2024.02.15(목) 15:00~15:40 (안건통지일: 2024.02.0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서동규	김재기	이해선	조경엽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1 차 보상위원회	이이 어오				
개최 결과		이의 없 <del>음</del>			
나. 제 2024-1 차 감사위원회		0101 010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다. 2023 년도 감사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 41 기 재무제표 및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익배당(안)	신경	신경	신경	신경	<b>イ</b> [ 三
나. 제 41 기 영업보고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사채 연간 발행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및 일괄신고서 제출(안)	인이	인'0	인'0	인'0	기ㄹ
라. 2024 년 산업안전보건 추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획(안)	인이	인'0	인'0	인'0	기ㄹ
마. 자금세탁방지제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운영규정 개정(안)	L'O	년'0	12 o	년'0	/12
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개정(안)	LO	ll'o	Lo	l'o	기리



# (3) 제 3 차 이사회 : 2024.03.05(화) 15:00~15:30 (안건통지일: 2024.02.27)

항목		이사별 :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서동규	김재기	이해선	조경엽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 이사회 등 평가			0101 010		
결과	이의 없음				
나. 제 2024-1 차 임원후보		이의 없음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다. 2023 년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보고		이의 없음			
라. 2023 년 내부회계관리	0101 010				
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이의 없음				
마. 제 2024-2 차 감사위원회	0101 HS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바. 2023 년 내부통제 체계·			이의 없음		
운영실태 점검 결과			이의 따금		
사. 2023 년 하반기 자금세탁			이의 없음		
방지제도 운영 결과					
아. 2023 년 금융소비자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			이의 없음		
점검 결과					
자. 2024 년 금융소비자보호			이의 없음		
이행도 평가 운영(안)					
4. 의결안건					
가. 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 년 이사 보수 한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승인(안)	· 근 O	'근' O	'근' O	근 0	<b>1</b> 12
다. 이사회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정관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케이뱅크와의 2024 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한도 설정(안)					
바. 제 41 기 정기 <del>주주총</del> 회 소집(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4) 제 4 차 이사회 : 2024.03.29(금) 16:30~17:15 (안건통지일: 2024.03.26)

항목	이	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김범준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2 차 보상위원회		٨١٨١	МО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나. 제 2024-3 차 감사위원회		٨١٥١	МО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다. 제 2023-10 차, 제 2024-					
1,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라. 2024 년 개인신용정보의		٨١٥١	어ㅇ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사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의장 및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선임(안)	건'0	선경	건'0	<b>1</b> 1⊒	
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	건'0	선경	건'0	<b>1</b> 1⊒	
라. 제 2024-2 차 주요주주	사서	フレブゴ			
등과의 거래(안)	찬성	가결			
마. 사외이사 보수 변경(안)	찬성	가결			
바. 2024 년 사내근로복지	ᆉᅛᅥ	ᆉᅛᅥ	ᆉᅛᅥ	71.74	
기금 출연(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5) 제 5 차 이사회 : 2024.05.08(수) 09:00~09:33 (안건통지일: 2024.04.29)

	하모		이사별 즉	하도미여		가결
	항목		이사글 1	킬중대학		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1 분기 결산 보고	1분기 결산 보고 이의 없음				
	나. 제 2024-3 차 보상위원회	이이 어우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다. 제 2024-2 차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라. 제 2024-3 차 리스크관리			0101 010		
	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마. 제 2024-4 차 감사위원회			0101 010		
	개최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케이티텔레캅㈜와의					
	2023 년 체결 대규모 내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거래 변경(안)					

# (6) 제 6 차 이사회 : 2024.06.29(수) 15:00~15:20 (안건통지일: 2024.06.19)

. ,	- ( . ,				•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4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케이뱅크와의 2024 년					
3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한도 설정(안)					



나.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찬성	차서	<b>+</b> L.1l	<b>+</b> L	71.74
기부금 출연(안)	산성	산성	찬성	찬성	가결

# (7) 제 7 차 이사회 : 2024.07.23(화) 09:40~10:40 (안건통지일: 2024.07.1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상반기 결산 보고	이의 없음				
나.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이의 없음		
보고					
다. 제 2024-5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 의결안건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b>★ト</b> 서	<b>★ト</b> ᄊ	ナレイ	<b>*</b> IM	フレブゴ
공여(안)	신성	신성	신성	신성	가결
	. 이사 성명 2. 참석여부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상반기 결산 보고 나.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보고 다. 제 2024-5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안건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 이사 성명 이해선 . 참석여부 참석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상반기 결산 보고 나.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보고 다. 제 2024-5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안건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상반기 결산 보고 나.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보고 다. 제 2024-5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안건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찬성 찬성	. 이사 성명이해선조경엽박순애. 참석여부참석참석참석.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기. 2024 년 상반기 결산 보고이의 없음나.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보고이의 없음보고다. 제 2024-5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이의 없음. 의결안건차성찬성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찬성찬성	.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환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장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상반기 결산 보고 이의 없음 나.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보고 다. 제 2024-5 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안건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찬성 찬성 찬성

# (8) 제 8 차 이사회 : 2024.09.11(수) 09:00~09:23 (안건통지일: 2024.09.03)

,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이의 없음					
		이의 없음			
		0101 010			
이의 없음					
	이해선	이사별 이해선 조경엽	이사별 활동내역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참석     참석     참석	이사별 활동내역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이의 없음 이의 없음	



가. ㈜케이뱅크와의 2024 년					
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한도 설정(안)					
나. ㈜케이티엔지니어링과					
의 2023 년 체결 대규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내부거래 변경(안)					

# (9) 제 9 차 이사회 : 2024.10.08(화) 14:00~14:20 (안건통지일: 2024.10.02)

하모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항목	이사길 필중대학				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채무조정 내부규정	<b>*</b> LM	<b>*</b> L.\-1	<b>★</b> L.从-	<b></b> ↓L.\-l	71.73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0) 제 10 차 이사회 : 2024.11.14(목) 10:00~10:35 (안건통지일: 2024.11.06)

άΠ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항목		이사별 '	활동내억		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3 분기 결산 보고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 2024-3 차 주요주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등과의 거래(안)	신경	신경	신경	건'0	<b>1</b> 1⊒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한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L7:1
공여(안)	[ 건경	[ 건경	[ 건경	건경	가결



# (11) 제 11 차 이사회 : 2024.12.16(월) 16:30~17:30 (안건통지일: 2024.12.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 2024-5 차 보상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나. 제 2024-6 차 리스크관리					
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조직개선(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요업무집행책임자	+111	+111	+1.1.1	+1 1.1	-1.74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준법감시인 임면(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5 년 주요주주 등과의	<b>+</b> L.k-l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거래 승인(안)	찬성	신경	건경	건'0	<b>1</b> 1⊒
마.㈜케이뱅크와의 2025 년					
1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한도 설정(안)					
바. 2025 년 1 분기 을지사옥	<b>★</b> ↓↓-	<b>★</b> ↓↓-	<del>*</del> L.\-l	<del>*</del> L.\-l	71.74
임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LM +LM +LM +LM -174				
대한 신용한도공여(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대구지점 폐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03.05(화) 14:30~14:40 (안건통지일: 02.29)

항목	이사별 :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경엽	서동규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안)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	*L.\.	*L.\-	71.73
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가결

# (2)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03.29(금) 17:40~17:45 (안건통지일: 03.26)

항목	이사별 5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경엽	이해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b>★L</b> 从	찬성	71.73
위원장 선임(안)	찬성	신경	가결

# (3)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12.16(월) 16:00~16:15 (안건통지일: 12.11)

항목	이사별 목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경엽	이해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찬성	찬성	가결
및 후보군 관리(안)	건 0	건 0	<b>기</b> 글
나. 대표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가결
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안)	찬성	찬성	가결

# 다) 감사위원회

# (1)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24.01.30(화) 14:30~15:00 (안건통지일: 01.25)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서동규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 4 분기 감사실시	이의 없음			



	현황 보고				
4	. 의결안건				
	가. 2023 년도 감사결과 보고(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24.02.15(목) 15:45~16:15 (안건통지일: 02.07)

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서동규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01.01	МО		
운영실태 보고		이의 없음				
나. 2023 년 재무제표 마감에						
따른 외부감사인 보고		이의 없음				
다. 2023 년 제 41 기 재무제표			ار ار	없음		
제출의 건			이의	ᆹᆷ		
라. 2023 년 제 41 기 영업보고	서		ام ام	없음		
제출의 건			이의	ᆹᆷ		
4. 의결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E	H	찬성	찬성	차서	フレブヨ	
평가보고(안)		신경	건경	찬성	가결	
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	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견서 작성(안)		연경	연경	신경	7[ ]	

# (3) 제 3 차 감사위원회 : 2024.03.05(화) 15:35~15:55 (안건통지일: 02.2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서동규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제 41 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찬성	찬성	찬성	71. <i>7</i> 3
제출(안)	신경	신경	신경	가결
나.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검토 및 의견진술 위임(안)	신경	신경	신경	7[道



다. 2024 년 연간 감사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4) 제 4 차 감사위원회 : 2024.04.04(목) 10:00~10:05 (안건통지일: 03.2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5)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24.05.08(수) 10:27~11:07 (안건통지일: 04.29)

항목	이시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1 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	이의 없음				
나.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ام ام	ою		
현지조치사항 조치결과 보고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찬성	<b></b> ‡L.从-	<b></b> ‡L.从	71.74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안)	신경	찬성	찬성	가결	

# (6) 제 6 차 감사위원회 : 2024.07.23(화) 09:10~09:40 (안건통지일: 07.18)

항목	이시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2 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	이의 없음					

# (7) 제 7 차 감사위원회 : 2024.10.08(화) 11:00~12:06 (안건통지일: 09.30)



항목	이시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반기 재무제표 마감에					
따른 외부감사인 보고	이의 없음				

# (8) 제 8 차 감사위원회 : 2024.12.06(금) 09:06~10:00 (안건통지일: 12.02)

항목	이시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3 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	이의 없음				

# (9) 제 9 차 감사위원회 : 2024.12.16(월) 16:15~16:30 (안건통지일: 12.11)

항목	이시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준법감시인 면직에 대한						
사전심의(안)	이의 없음					

# (10) 제 10 차 감사위원회 : 2024.12.18(수) 14:00~15:25 (안건통지일: 12.1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b></b> ‡L.从	<b></b> ‡L.从-	찬성	71.73
대한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신경	가결



나. 2025~2027 회계연도	찬성	찬성	<b></b> †L 从	가결
외부감사인 선임(안)	[ 신경	신경	신경	기열

#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 (1) 제 1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2.14(수) 15:00~16:00 (안건통지일: 02.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이해선 김재기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4분기 리스크		ار ار	어ㅇ	
점검결과	이의 없음			
나. 기업여신 특별상품 심사기준				
변경 결과	이의 없음			
4.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 사채 연간 발행한도 설정 및		의아	심의	
일괄신고서 제출(안)		견		
5. 의결안건				
가. 2024 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	신 6	기 ㄹ		
나. 위험관리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b>가결</b>			
다. 대체투자 리스크관리지침	차서	차서	차서	フレ <i>ブ</i> は
개정(안)	찬성   찬성   <b>가결</b>			
라. 여신감리지침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 제 2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24.03.25(월) 10:30~11:00 (안건통지일: 03.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블라인드 펀드 심사 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3) 제 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3.29(금) 17:15~17:40 (안건통지일: 03.27)

항목	이사별 횕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비씨전략투자조합2호 추진 계획	이의 없음				
나. 법인카드 한도부여기준 개정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가결		

# (4) 제 4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5.08(수) 09:30~10:10 (안건통지일: 05.0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1분기 리스크				
점검결과	이의 없음			
나.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 결과	이의 없음			

# (5) 제 5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8.21(수) 15:00~16:20 (안건통지일: 08.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2분기 리스크				
점검결과	이의 없음			
나.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및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평가지침 개정(안)	신경	건	신경	<b>1</b> [2
다. 부동산 PF 리스크관리지침	찬성	찬성	찬성	フレブヨ
개정(안)	[ 신경 	신경	신경	가결
라. 2024 년 유동성리스크관리	찬성	찬성	찬성	71. <i>7</i> 3
표준(안)	[ 신경 	신경	신경	가결
마. 연체율 한도초과 상황 대비	찬성	찬성	ᆉᅥ	71. <i>7</i> 3
비상계획(안)	신경 	신경	찬성	가결

# (6) 제 6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11.14(목) 09:00~10:00 (안건통지일: 11.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3분기 리스크 점검결과	이의 없음			
나.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법인카드 심사체계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여신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 년 유동성리스크 관리 표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마) 보상위원회

# (1) 제 1 차 보상위원회: 2024.01.30(화) 15:35~15:55 (안건통지일: 01.24)

항목	이사별 즉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서동규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임원 성과보상 이연지급(안)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 년 임원 보수(안)	찬성	찬성	가결

# (2) 제 2 차 보상위원회: 2024.03.05(화) 14:40~14:50 (안건통지일: 02.28)

항목	이사별 :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서동규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3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b></b> ±L ↓-l	<b>+</b> L Jl	71.73
작성 및 공시(안)	찬성 	찬성 	가결

# (3) 제 3 차 보상위원회: 2024.03.29(금) 17:20~17:40 (안건통지일: 03.26)

항목	이사별 :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김범준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 년도 성과지표(KPI) 평가(안)	찬성	찬성	가결
다. 2023 년도 임원 성과급 지급(안)	찬성	찬성	가결

# (4) 제 4 차 보상위원회: 2024.05.30(목) 14:00~14:20 (안건통지일: 05.24)

항목	이사별 3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김범준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 년도 성과지표(KPI) 설정(안)	찬성	찬성	가결

# (5) 제 5 차 보상위원회: 2024.11.14(목) 11:00~11:15 (안건통지일: 11.11)

항목	이사별 5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김범준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 년 준법감시, 위험관리,	찬성	찬성	가결
소비자보호그룹장 성과지표(안)		)	- 1
나. 2024 년 임원 성과보상(안)	찬성	찬성	가결

##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 가) 사외이사 이해선

이해선 사외이사는 2024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중 11회에 참석하였고, 리스크관리 위원회(위원장) 6회중 6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중 2회, 감사위원회 10회중 10회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2024-7 차 이사회에서는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보고 관련하여 '24년 상반기 기준 페이북 유효회원수는 1,100 만명인데, 월 방문 회원수는 424 만명인점에 대해 질의하여, 다른 경쟁 카드사와 비교했을때 가입회원수 대비 방문회원수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도 그 비율을 올리려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 2024-9 차 이사회에서는 채무조정 내부규정 제정(안)관련하여 채무조정에 있어 향후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다양한 이해상충 사례가 나올수있기 때문에 관련 중재나 조정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해선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34.7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나) 사외이사 조경엽

조경엽 사외이사는 2024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 회중 11 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3 회중 3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 회중 6 회, 보상위원회 5 회중 5 회,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2024-9 차 이사회에서 채무조정 내부규정 제정(안) 관련 절차를 질의



하여 개인채무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만 채무조정 심사가 진행되는 등의 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제 2024-11 차 이사회에서 조직개선(안) 관련하여 AI 본부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여, 첫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싱 사업 효율화 및 자체 사업에서 고객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며, 두번째는 전사의 업무 환경을 AI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경엽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29.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다) 사외이사 박순애

박순애 사외이사는 임기시작 후 2024년 중 개최된 이사회 7회중 7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위원장) 7회중 7회, 리스크관리위원회 3회중 3회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2024-7 차 이사회에서 2024년 상반기 결산 보고 관련하여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건 내부적으로 혁신 내지는 효율성을 추구했다라는 측면에서 강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영업이익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지 마진의 포인트를 찾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 2024-9 차 이사회에서는 채무조정 내부규정 제정(안) 관련하여 법 시행에 따른 업무량, 리스크 대응 등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순애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총 29.6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라) 사외이사 김범준

김범준 사외이사는 임기시작 후 2024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중 8회에 참석하였고, 보상위원회(위원장) 3회중 3회, 감사위원회 7회중 7회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2024-7 차 이사회에서 2024 년 상반기 결산 보고 관련하여 최근 뉴스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24 년 1 분기 연체율 현황이 전 분기 대비 많이 오른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비씨카드의 상황이 어떤지 질의하여, 리스크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대손비용 축소를 통한 건전성 강화)

제 2024-10 차 이사회에서는 2024 년 3 분기 결산 보고 관련하여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아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 사이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범준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28.3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마) 사외이사 서동규(임기 만료)

서동규 사외이사는 2024 년 중 3 월 임기 만료 전까지 개최된 이사회 3 회중 3 회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중 1 회, 감사위원회 3 회중 3 회, 보상위원회 2 회중 2 회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동규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3.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바) 사외이사 김재기(임기 만료)

김재기 사외이사는 2024 년 중 3 월 임기 만료 전까지 개최된 이사회 3 회중 3 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3 회중 3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2 회중 2 회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재기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4.6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바) 요약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사외	이시	이사회		임원후보		감사		리스크		보상	
이사			추천위원회 위원회		관리위원회		위원회		(분)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이해선	11	11	2	2	10	10	6	6			2,081
조경엽	11	11	3	3			6	6	5	5	1,771
박순애	7	7			7	7	3	3			1,776
김범준	8	8			7	7			3	3	1,696
서동규 (임기만료)	3	3	1	1	3	3			2	2	225
김재기	3	3			3	3	2	2			275

<sup>\*</sup> 회의참석시간 및 교육,워크샵 일정 포함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계약명 : 임원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 비씨카드㈜ 및 소속 임원 (자회사 포함)

- 보험기간 : 2024.01.01 ~ 2025.01.01

- 담보지역 : 전세계

- 보험사 : DB 손해보험/삼성화재 공동인수

- 보험료 : 115,710,000 원

- 보상한도: 700억원 (고용관행배상책임 20억원, 외감법에 의한 과징금 10억원)

- 담보범위

이 임원의 배상책임 담보임원의 부당행위로 제기된 주주 또는 제 3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임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보상

회사의 보상책임 담보임원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회사가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o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유가증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임원 개인 뿐만 아닌 법인에 대해 직접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확장하여 담보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o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한 배상청구
  - ㅇ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o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사채 등 매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청구
  - ㅇ 법령위반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
  - ㅇ 피보험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o 정치단체,공무원,거래선의 임직원 및 이익제공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자에게 제공한 이익에 기인한 배상청구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ī	T	ı		
사외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김범준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 일자 : '24.3.26(화)~27(수) (각 60분)				
	ㅇ 내용 :	신임 감사위	원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대상아님	대상아님	참석	참석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 일자 : '24.4.29(월)~5.10(금) (360 분)				
	ㅇ 내용 : 자금세탁방지교육(온라인)			인)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 일자 : '24.7.23(화) (60 분)				
	ㅇ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소개 및 최근 동향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ㅇ 일자 : '24.10.8(화) (30 분)				
	ㅇ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정 및 FY 중점 점검				
	회계 이슈 등 감사위원회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대상아님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hour)	7.5	7.0	8.5	8.5	



###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1) 사외이사 이해선

##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해선 이사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1)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소비자보호, 정보기술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이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자문교수, SM 상선㈜ 상근 감사,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금융채권자 조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2)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이사는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윤리성,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 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이사는 現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경력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4)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이사는 이사회 11 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6 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10 회 참석(참석률 100%)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해선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워크샵,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

# 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고려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등 참석률 100%

## 2) 사외이사 조경엽

# 가) 소극적 자격요건

조경엽 이사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1)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소비자보호, 정보기술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엽 이사는 경제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2)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엽 이사는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윤리성,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엽 이사는 現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재분석팀장 경력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 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4)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엽 이사는 이사회 11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참석(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5회 참석(참석률 100%), 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조경엽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워크샵,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



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고려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등 참석률 100%

## 3) 사외이사 박순애

##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순애 이사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1)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소비자보호, 정보기술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이사는 환경계획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및 유엔 공공행정전문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2)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이사는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윤리성,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 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이사는 現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現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등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는 등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기여를하고 있습니다.

### (4)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이사는 이사회 7 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7 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3 회 참석(참석률 100%)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수행하였습니다.

박순애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워크샵,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고려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등 참석률 100%

### 4) 사외이사 김범준

###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범준 이사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 (1)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소비자보호, 정보기술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이사는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학과장)로 재직 중인 회계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2)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이사는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윤리성,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이사는 現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現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실무위원회 위원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및 참여를 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4)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에서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이사는 이사회 8 회 참석(참석률 100%), 보상위원회 3 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7 회 참석(참석률 100%)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김범준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워크샵,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0 1 11	0 1 111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평판 및 이사회 활동 고려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등 참석률 100%

####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기부금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 바. 사외이사 평가

###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 임기를 3 년 이내로 정하며 연임 시 임기는 1 년 이내로 하고, 총 재임기간은 6 년 또는 이 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평가 기준에 의거,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보장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2) 평가 기간

당사 이사회는 전년도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익년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평가 기준

당사 이사회는 제 2023-4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사회 등 평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선임시 고려된 전문성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참여도(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윤리성 및 충실성(기밀유지 및 이익충돌 회피 등)에 대해 5점 척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2024년 사외이사 평가는 2025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제 2025-1차 이사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 4) 평가 절차

2024 년 사외이사 평가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5)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사 이사회는 2024년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6) 평가 결과

2024 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전문성, 참여도, 윤리성/충실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세부내용)

11010111	평가결과					
사외이사	전문성	참여도	윤리성/충실성			
조경엽	우수(S)	우수(S)	우수(S)			
이해선	우수(S)	우수(S)	우수(S)			
박순애	우수(S)	우수(S)	우수(S)			
김범준	우수(S)	우수(S)	우수(S)			

<sup>\* [</sup>평가등급] 4점이상:우수(S), 3점이상:양호(A), 2점이상:보통(B), 2점미만:미흡(C)

#### ※ 평가근거

해당 평가는 2025.1.22 일 ~ 2.3 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온라인/비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진 전원(본인평가, 동료평가) 및 내부임원(경영기획본부장, 준법감시인)에 의한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최원석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지 만,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지 못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비씨카드 정관에 의거 2024년 3월 29일에 개최된 제 4차 이사회에서 이해선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신규선임 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의장,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선 이사는 선임이사로서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사외이사들간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소통을 위한 워크샵을 제안하여 시행하거나, 주요 이사회 안건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선임사외이사로서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2024-6 차 이사회에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출연(안) 관련하여 서민금융지원 부분이 2022 년 대비 2023 년에 대폭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여, 기존 대여금 회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여금이 크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 2024-7차 이사회에서는 페이북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보고 관련하여 '24년 상반기 기준 페이북 유효회원수는 1,100 만명인데, 월 방문 회원수는 424 만명인점에 대해 질의하여, 다른 경쟁 카드사와 비교했을때 가입회원수 대비 방문회원수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도 그 비율을 올리려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 2024-9 차 이사회에서는 채무조정 내부규정 제정(안) 관련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에 있어 향후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다양한 이해상충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중재나 조정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경영기획본부 시너지팀(2024.12.31 기준)

- 조직구성 : 5 명(팀장 1 명, 팀원 4 명)

- 지원업무

- ·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 · 이사회 등의 회의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 이사회 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 ·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등

####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1) 사외이사 이해선

**가) 재직기간**: 12 개월(2024 년 기준)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7,900,000	
기본금	55,500,000	12 개월분
		구분 월지급액(원)
		'24.1~3월 급여 5,000,000



					기본급	4,000,000
				′24.4~12 월	직책수당	500,000
					(위원장)	300,000
	 상여금					
	기타수당	2,400,000	회의 참석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sup>\* 2024</sup> 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24.12 월 회의 참석수당은 '25.1 월에 반영예정)

# 2) 사외이사 조경엽

**가) 재직기간**: 12 개월(2024 년 기준)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7,900,000	00			
	기본금	55,500,000		12 개월분		
				구분	분	월지급액(원)
				′24.1~3 월	급여	5,000,000
					기본급	4,000,000
				′24.4~12 월	직책수당	500,000
					(위원장)	
	상여금					
	기타수당	2,400,000	회의 참석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sup>\* 2024</sup> 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24.12 월 회의 참석수당은 '25.1 월에 반영예정)

# 3) 사외이사 박순애

**가) 재직기간**: 9 개월(2024 년 기준)

#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900,000			
기	본금	40,500,000	9 개월분(2	24.04.01 임기시작)	
			구분	월지급액(원)	
			기본급	4,000,000	
			직책수당	500,000	
			(위원장)	300,000	
상	 }여금				
기	타수당	2,400,000	회의	참석수당	
나. 보수	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	건강검진 지원				
차	· 량제공				
사	<b>나무실제</b> 공				
기	타 편익 제공				

<sup>\* 2024</sup> 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24.12 월 회의 참석수당은 '25.1 월에 반영예정)

# 4) 사외이사 김범준

**가) 재직기간**: 9 개월(2024 년 기준)

|--|



가. 보수총액		43,635,483	
	기본금	40,935,483	9 개월분(24.03.29 임기시작 / '24 년 3 월 재직분 일할 계산) 구분 월 지급액(원) 기본급 4,000,000 직책수당 (위원장)
	상여금		
	기타수당	2,700,000	회의 참석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sup>\* 2024</sup> 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24.12 월 회의 참석수당은 '25.1 월에 반영예정)

# 5) 사외이사 서동규(임기 만료)

**가) 재직기간**: 3 개월(2024 년 기준)

항목		금액(원) 산출내		역		
가. 보수총액		15,000,000				
	기본금	15,000,000		3 개월('24.03.29 임기만료		임기만료)
				구분		월지급액(원)
				′24.1~3 월	급여	5,000,000
	상여금					
	기타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sup>\* 2024</sup> 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6) 사외이사 김재기(임기 만료)

**가) 재직기간**: 3 개월(2024 년 기준)

#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5,000,000			
	기본금	15,000,000	3 개월('24.03.29 임기만료)		
			구분 월지급액(원)		
			'24.1~3월 급여 5,000,000		
	상여금				
	기타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 제공				

<sup>\* 2024</sup> 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계약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서대	최초	임기	재임	담당	직위	건건
성명	선임일	만료일	기간	위원회	식취	경력



	T .		I	<u> </u>	<u> </u>	
최원석	′15.03.23	′21.02.07	71 개월	리스크관리위 (15.03~'17.03) (20.11~'21.2) 보상위 (15.03~'17.03) 감사위 (15.10 ~ '21.02)	감사위원회 위원장 (20.03~'21.02)	· 前 에프앤자산평가 사장 · 前 에프앤자산평가 전무
김재봉	′17.03.30	′20.03.25	35 개월	리스크관리위 (17.03~'20.03) 감사위 (18.09~'20.03)	감사위원회 위원장 ('18.09~'20.0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8.09~'19.03)	· 前 파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 前 광주농산물유통센터 사장
최병조	′18.07.27	′21.03.25	32 개월	리스크관리위 (18.09~'21.03) 보상위 (18.12~'21.0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19.05~'21.03)	<ul><li>前IBK 기업은행</li><li>강서지역본부장</li><li>· 前IBK 기업은행</li><li>전략기획부장</li></ul>
류근원	′20.03.25	′22.03.29	24 개월	감사위 (20.03~'22.03) 리스크관리위 (20.03~'22.0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21.03~'22.03)	<ul> <li>前 농협중앙회 상무</li> <li>前 농협중앙회</li> <li>문화홍보부장</li> <li>前 농협중앙회</li> <li>해외협력실장</li> </ul>
문종박	′21.03.25	′21.12.15	8 개월	감사위 (21.03~'21.12) 리스크관리위 (21.03~'21.12)	감사위원회 위원장 (21.04~'21.12)	<ul> <li>前 현대오일뱅크 사장</li> <li>前 현대오일뱅크 부사장</li> <li>前 현대오일뱅크</li> <li>기획조정실</li> <li>/글로벌사업 총괄 부사장</li> </ul>
박춘홍	′21.03.25	′23.03.31	24 개월	리스크관리위 (21.03~'23.03) 보상위 (21.03~'23.03) 감사위 (22.03~'23.03)	감사위원회 위원장 (22.03~'23.03)	<ul> <li>前 IBK 기업은행 전무이사</li> <li>前 IBK 기업은행 경영지원</li> <li>본부장(부행장급)</li> <li>前 IBK 기업은행 기업고객</li> <li>본부장(부행장급)</li> </ul>
서동규	′22.03.29	′24.03.29	24 개월	감사위 (22.03~24.03) 리스크관리위 (22.03~23.03) 보상위,	보상위원회 위원장 ('23.03~'24.0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 現㈜신도리코 대표이사 · 前 스틱인베스트먼트 시니어파트너 ·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23.03~'24.03) 임추위 (23.03~'24.03)	(22.03~23.03)	
김재기	′22.03.29	′24.03.29	24 개월	감사위, (22.03~'24.03) 리스크관리위 (22.03~'24.03)	감사위원회 위원장 (22.03~'24.03)	· 現중소기업신문 대표이사 · 前 농협중앙회 홍보실장 · 前 농협은행 인천지역 본부장
이해선	′23.03.31	'25 년 정기 주총일	21 개월	감사위 (23.03 ~현재) 리스크관리위, (23.03~현재) 임추위 (24.03 ~현재)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장 ('23.03~현재)	<ul> <li>現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li> <li>前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li> <li>前 SM 상선 상근감사</li> <li>前 한국금융연수원 전문자문교수</li> <li>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li> </ul>
조경엽	′23.03.31	'25 년 정기 주총일	21 개월	임추위 (23.03~현재), 보상위, (23.03~현재) 리스크관리위 (23.03~현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23.03~현재)	<ul> <li>・現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li> <li>・前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li> <li>・前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li> </ul>
박순애	′24.03.29	'26 년 정기 주총일	9 개월	감사위 (24.03~현재), 리스크관리위 (24.03~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 (24.03~현재)	· 現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現유엔 공공행정전문가 위원회 위원 ·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 · 前 한국행정학회 제 56 대 회장
김범준	′24.03.29	'26 년 정기 주총일	9 개월	보상위 (24.03~현재), 감사위 (24.03~현재)	보상위원회 위원장 (24.03~현재)	<ul> <li>現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li> <li>前한국과학기술원 경영</li> <li>공학과 겸직교수</li> <li>前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li> </ul>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과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 년 3 월에 개최된 제 2 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사회는 매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 일반

당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 5 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 선발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활용하고 있으며,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2024 년 12월 16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후보군 5명을 최초 선정하였으며, 2024년말 기준 5명의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 및 내규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후보를 확정하여 이사회를 거쳐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 2) 비상계획

최고경영자가 임기만료 이외에 사임, 유고 등으로 더이상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39 조,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직무대행자가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비상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와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진행합니다.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1) 소극적 요건

#### -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 평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며,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위에 부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극적요건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며,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 자격요건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평가

現 최원석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 내 주요사업에 대한 높은 업무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비씨카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환경 및 AI등 신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매입사업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혁신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자체사업 (카드,금융,페이북,데이터 등)을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는 등 뛰어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를 보여주는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現 최원석 대표이사의 업적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12월 16일 제 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 등 내규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을 위하여 주주, 이해관계자, 외부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3.12.28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03.29	사내이사 선임	제 41 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9	대표이사 선임	제 4 차 이사회
2024.12.16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군 관리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12.16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여 운영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시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2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보고일자: 2024년 12월 16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분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5	100%	
	금융회사	-	-	
외	비금융회사	-	-	
부	공공기관	-	-	
기타		-	-	
	합계	5	100%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 제 4 조에 따라 이사회가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 회 이상 그 적정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6일에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 시기, 비상시 경영승계절차 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2025년 2월 12일에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지원부서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인 시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동 팀에서는 파트별로 담당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이해상충소지가 적으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경영기획본부 시너지팀

- 직원수 : 총 5명(팀장 1명, 팀원 4명)



# 6. 감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 재무/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① 이사회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상감사 업무를 내부감사부서장(감사팀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및 직무규정에 의거 이사회 안건에 대해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1장 3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2장 5조)이에 감사위원회는 2024년 총 11회의 이사회 안건 전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 진행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412 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 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402 조).

또한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감사위원회 규정 1 장 3 조).

이에 실시한 주요 감사내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IT 감사, 사무인수인계 감사,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 채용절차 준수의 적정성 점검,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점검 등이 있습니다.



###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 관련 사항을 문서로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외부감사법 10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 3장 14조).

이에 감사위원회는 2021년 11월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 개년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분 류	배 점
	카드업계 감사수행 실적(최근 5년간)	10
	투입(예정) 인원의 전문성 및 신뢰성	10
ᆉᆡᄑᅐ	감사품질 향상 및 서비스 계획	10
감사품질 	비즈니스 이해수준	20
	미국 PCAOB 대응 경험 유무	10
	감사독립성	10
가 격 감사보수		30
	합 계	100

또한 감사위원회는 2024년 제 2차 감사위원회 '2023년 재무제표 마감에 따른 외부 감사인 보고' 및 2024년 제 7차 감사위원회 '2024년 반기 재무제표 마감에 따른 외부 감사인 보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2024 년 제 10 차 감사위원회 '2025~2027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안)'을 통해 2024 년 12 월에 2025 년부터 2027 년까지 3 개년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분 류	배 점
	카드업계 감사수행 실적(최근 5년간)	10
감사품질	투입(예정) 인원의 전문성	10
검사품걸 	감사품질 향상 및 서비스 계획	20
	비즈니스 이해수준	30
가 격	감사보수	30
	100	



### 다) 내부감사부서장(감사팀장)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감사부서장에게 위임하며, 내부감사부서장은 위임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합니다(감사위원회 규정 4장 17조).

-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이에 내부감사부서장은 위임 받은 사항 및 중요 업무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법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9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 년 2 월 제 2 차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제 41 기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 받았고, 2024 년 2 월 제 2 차 감사위원회에서 재무제표 마감에 따른 외부감사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4 년 3 월 제 3 차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 연도마다 보고합니다. (외부감사법 8조)

이에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2024년 3월 제3차 이사회에 보고



하였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동 이사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부서 등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고,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8 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5 장 16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 년 2 월 2 차 감사위원회에서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받아, 2024년 3월 제 3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 인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호의 1 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2 장 8 조)

- 1.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3. 10 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간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는 3 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중 1 인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되었습니다.



# 2) 구성원 (기준일: 2024.12.31)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フリエリフリ	TOI	위원장	122.02.20	'24 년
김재기	사외	(임기 만료)	′22.03.29	정기주주총회일
서도 그 1)	Hol	위원	122 02 20	′24 년
서동규 <sup>1)</sup>	사외	(임기 만료) '22.03.29		정기주주총회일
이웨서	H OI	위원	/22.02.21	'25 년
이해선	사외		′23.03.31	정기주주총회일
바스에	ПО	이이자	/24.02.20	'26 년
박순애 	사외	위원장	′24.03.29	정기주주총회일
기버즈 1)	1Lol	0  0	/24.02.20	'26 년
김범준 <sup>1)</sup> 	사외	위원	′24.03.29	정기주주총회일

비고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4 년에는 총 10 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로 충실히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24.01.30(화) 14:30~15:00 (안건통지일: 01.2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서동규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sup>1)</sup> 회계·재무전문가

<sup>\*</sup>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및 정관 제3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분리선임 中



가. 2023 년 4 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 년도 감사결과 보고(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2023 년 4분기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

#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2023 년도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승인

# 나)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24.02.15(목) 15:45~16:15 (안건통지일: 02.07)

항목	이시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서동규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NOL OLO			
운영실태 보고	이의 없음			
나. 2023 년 재무제표 마감에				
따른 외부감사인 보고	이의 없음			
다. 2023 년 제 41 기 재무제표		0	의 없음	
제출의 건		O	1의 ᆹᆷ	
라. 2023 년 제 41 기 영업보고서		0	의 없음	
제출의 건		O	1의 ᆹᆷ	
4. 의결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b>⊁ŀ</b> .₩	ᆉᅥ	ᆉᅥ	71. <i>7</i> 3
평가보고(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 \d	찬성	*LM	71. <i>7</i> 3
의견서 작성(안)	찬성	신경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안건]

-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 나) 2023 년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 다) 상법 제 447 조의 3 에 의거, 2023 년 제 41 기 재무제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 라) 상법 제 447 조의 3 에 의거, 2023 년 제 41 기 영업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

### [의결안건]

-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에 대하여 승인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에 대하여 승인

### 다) 제 3 차 감사위원회: 2024.03.05(화) 15:35~15:55 (안건통지일: 02.2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서동규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제 41 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차서	사서	찬성	가결
제출(안)	찬성   찬성 		기열	
나.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한	ᆉᅛ	찬성	<b>⊁ŀ</b> .₩	71. <i>7</i> 3
검토 및 의견진술 위임(안)	찬성	건(7)	찬성	가결
다. 2024 년 연간 감사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 안건]

- 가) 상법에 의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승인
- 나) 상법에 의거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진술 위임에 대하여 승인
- 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2024년 연간 감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 라) 제 4 차 감사위원회: 2024.04.04(목) 10:00~10:05 (안건통지일: 03.2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 안건]

가) 상법 및 정관에 의거 감사위원회 박순애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승인

# 마)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24.05.08(수) 10:27~11:07 (안건통지일: 04.2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1 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	이의 없음				
나.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0	101 010		
현지조치사항 조치결과 보고		O	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 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2024년 1분기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
- 나)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현지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 [의결 안건]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안) 의결

# 바) 제 6 차 감사위원회: 2024.07.23(화) 09:10~09:40 (안건통지일: 07.18)

항목	이사	사별 활동L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2 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	이의 없음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2024년 2분기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

# 사) 제 7 차 감사위원회: 2024.10.08(화) 11:00~12:06 (안건통지일: 09.30)

항목	이시	사별 활동L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반기 재무제표 마감에					
따른 외부감사인 보고	이의 없음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2024 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중간 보고

# 아) 제 8 차 감사위원회: 2024.12.06(금) 09:06~10:00 (안건통지일: 12.02)

항목	이시	↓별 활동니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3 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		0	의 없음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2024년 3분기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

# 자) 제 9 차 감사위원회: 2024.12.16(월) 16:15~16:30 (안건통지일:12.11)

항목	이시	사별 활동L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 준법감시인 면직에 대한					
사전심의(안)	이의 없음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심의 안건]

가) 감사위원회 규정 제 14 조에 의거, 준법감시인 면직에 대한 사전 심의

# 차) 제 10 차 감사위원회 : 2024.12.18(수) 14:00~15:25 (안건통지일:12.12)

항목	이시	↓별 활동니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순애	이해선	김범준	-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한 동의의 건	;O	(Ö	;O	/[걸
나. 2025~2027 회계연도	<b>★ŀ</b> ₩	찬성	<b>★ŀ</b> ₩	71. <i>7</i> 3
외부감사인 선임(안)	찬성	신경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 안건]

가) 감사위원회 규정 제 3 조, 제 14 조에 의거,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결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와 감사위원회 규정 제 3 조, 제 14 조에 의거, 2025~2027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안)에 대해 의결

# 3) 평가

당사는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매년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주주총회 20 일 전까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위원회 효율적 진행,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이 있으며 2024년 평가에서 감사위원회는 평균득점 4.94점 우수(S) 등급을 받아 경영진의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 감사보조조직의 명칭은 '감사팀'으로 감사팀장이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총 인원은 9명입니다.



감사팀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3 장 15 조).

또한 내부감사부서장은 직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감사역이 아닌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하여 감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감사직무처리지침 규정 3조).



# 7. 리스크관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리스크 전반에 대한 전략, 정책을 최종 승인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 전략 이행여부 모니터링

### 2) 구체적 역할

###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매년 초 경영전략 및 외부환경을 감안한 익스포져 한도 전략 등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에 배포 후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신규 사업(또는 상품)의 추진(또는 취급)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업무상 매출채권 발생 시,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경감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세부적인 업무 절차와 내부 규제 내용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규 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상품 내용 및 구조에 잠재되어 있는 주요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전략(감축, 회피, 수용, 이전)과 상위 수준의 대응방안을 1 차적으로 수립합니다. 그 이후 각 대응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심사담당부서에서는 유관부서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여신·투자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영업담당부서는 승인받은심사기준에 따라 전문심사역의 심사 또는 자동화된 모형을 통해 신규 상품을 취급할수 있습니다.



#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원회에서는 주요 경영지표 또는 규제지표에 한도를 설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리스크가 관리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 상품별 연체율 한도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도가 초과되거나 부도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 위험을 점검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후 이행을 모니터링 합니다.

개별 투자 및 여신에 대한 승인 여부는 심사담당 조직에서 수행하나, 거액의 여신(또는 투자) 및 해외 새로운 유형의 투자 결정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화 되어 있는 등 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 이내로 관리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상정안건 중 자본출자, 주식 취득·처분 등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 진행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 리스크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절차화 되어 있습니다.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영업·재무 계획 외에도 규제비율 준수, 집중화 위험 최소화, 특정 포트폴리오의 잠재위험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상품별로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합니다.

여신상품의 경우, 연체율 또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신용도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재무적 투자 관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매수·매도하고 있지 않음으로 별도의 손실허용한도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 상품 투자 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담보가 확보된 투자상품에 대출 또는 투자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보 처분을 통해 일정 수준 이내로 손실이 제한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기준 및 이하 세부 분야별 규정인 리스크관리지침 등 각종 리스크 관리 관련 규정과 여신심사위원회 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제·개·폐 권한을 모두 갖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마) 기타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사업리스크, 대체투자리스크 등 주요 영역별 리스크 관리 절차 및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위험을 감축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3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해선	사외이사	위원장	′23.03.31	'25 년 정기주주총회일
조경엽	사외이사	위원	′23.03.31	'25 년 정기주주총회일
박순애	사외이사	위원	′24.03.29	'26 년 정기주주총회일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4 년에는 총 6 차례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수립 外 여신심사기준과 각종 규정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분기별 리스크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적정한 대응전략을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가) 제 1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24.02.14(수) 15:00~16:00 (안건통지일: 02.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 년 4 분기 리스크					
점검결과	이의 없음				
나. 기업여신 특별상품 심사기준					
변경 결과	이의 없음				
4.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가. 사채 연간 발행한도 설정 및		의아	심의		
일괄신고서 제출(안)		편인	`d'		
5. 의결안건					
가. 2024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	(건)	(건)	건 0	<b>八</b> 百	
나. 위험관리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체투자 리스크관리지침 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정(안)	건경   건경   건경		건경	/ 1 ㄹ	
라. 여신감리지침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 (1) 분기별 한도점검, 각종 위험 유형별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 (2)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 결과에 대한 위원회 사후 보고

# [심의 안건]

(1) 이사회 안건 중 자금조달 사안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

# [의결 안건]



- (1) 각종 한도전략 등 연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승인
- (2) 위험관리기준 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3) 대체투자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4) 여신감리 지침 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나) 제 2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3.25(월) 10:30~11:00 (안건통지일: 03.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김재기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블라인드 펀드 심사 기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 안건]

(1) 금융투자 상품인 블라인드 펀드 심사 기준에 대한 위원회 승인

# 다) 제 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03.29(금) 17:15~17:40 (안건통지일: 03.27)

항목	이사별 횕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비씨전략투자조합 2 호 추진 계획	이의 없음				
나. 법인카드 한도부여기준 개정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 (1) 블라인드 펀드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조합 출자 계획 보고
- (2) 기업여신(법인카드) 심사기준 개정 결과에 대한 위원회 사후 보고

# [의결 안건]

(1) 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 이해선 위원장 선임

# 라) 제 4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24.05.08(수) 09:30~10:10 (안건통지일: 05.0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1 분기 리스크	이의 없음			
점검결과				
나.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 결과	이의 없음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 (1) 분기별 한도점검, 각종 위험 유형별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 (2)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 결과에 대한 위원회 사후 보고

# 마) 제 5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24.08.21(수) 15:00~16:20 (안건통지일: 08.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2 분기 리스크 점검결과	이의 없음			
나.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 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및 평가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부동산 PF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 년 유동성리스크관리 표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연체율 한도초과 상황 대비 비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 (1) 분기별 한도점검, 각종 위험 유형별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 (2)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 결과에 대한 위원회 사후 보고

### [의결 안건]

- (1)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2)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및 평가지침 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3) 부동산 PF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4) 유동성리스크관리 표준(안) 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5) 연체율 한도 초과 수준에 따른 비상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승인

### 바) 제 6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4.11.14(목) 09:00~10:00 (안건통지일: 11.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해선	조경엽	박순애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 년 3 분기 리스크	이의 없음			
점검결과				
나.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결과	이의 없음			
4. 의결안건				



가. 법인카드 심사체계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여신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 년 유동성리스크 관리 표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보고 안건]

- (1) 분기별 한도점검, 각종 위험 유형별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 (2) 기업여신 심사기준 개정 결과에 대한 위원회 사후 보고

#### [의결 안건]

- (1) 법인카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위원회 승인
- (2) 여신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3) 여전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 개정('24.11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관리 표준(안) 개정에 대한 위원회 승인

#### 3) 평가

당사는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매년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주주총회 20일 전까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위원회 효율적 진행,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이 있으며 2024년 평가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평균득점 5.00 점으로 우수(S)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 8. 경영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당사는 지배인의 해임 및 선임,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 2 인 이사로 구성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 규정 제 4 조"에 의거하여 경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감사위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 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경영위원회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경영위원회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지배인의 해임 및 선임
-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나. 구성(경영위원회위원)

#### 1) 총괄

당사 "경영위원회 규정 제 3 조"에 의거하여 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경영위원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	----	-----	--------



최원석	상임	위원장	′21.03.25	′25 년 정기주주총회일
장민	비상임	위원	′24.03.29	'26 년 정기주주총회일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24 년도에는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2024 년도에는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 3) 평가

해당사항 없음



# 9. 경영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0. 리스크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사는 2024 년도에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등과 관련된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당사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추후 개선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경영진과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1. 보상위원회

#### 가. 총괄

보상위원회는 임원 등의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관련 내부 규정으로 「보상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이사회 규정」 제 8 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근거하여 2015 년 3 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연속하여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4년말 기준으로 위원 3 인 모두 재임기간이 2년 미만입니다.

또한「보상위원회 규정」제8조(의사록)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2023 년 3 월 16 일부터 「보상위원회 규정」 제 2 조(구성)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2 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4 년말 기준으로 보상위원회는 총 3 인(김범준, 조경엽, 장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김범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위원이 사외이사로 있어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중 김범준 위원은 현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장으로 재임 중인 회계 및 재무분야 전문가이며, 조경엽 위원은 현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및 당사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비상임이사인 장민 위원은 현 ㈜케이티 재무실장으로 보상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룰수 있는 구성원입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이 선임되기 전인 2024 년 3 월 주총 전까지는 서동규 이사(사외), 조경엽 이사(사외), 김영우 이사(비상임)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 2024 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 >

성명	지대	사외이사 여부	금융,회계,재무	OE <sup>24</sup>
86	직명	(리스크관리위원 여부)	종사 경험	약력
서동규	위원장	사외이사	40	現㈜신도리코 대표이사
ㅈ거(d	01 01	사외이사		現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위원	(리스크관리위원)	무	경제연구실장
				前㈜케이티
김영우	위원	비상임이사	무	그룹 Transformation 부문
				그룹경영실장

#### < 2024 년 3 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 여부)	금융,회계,재무 종사 경험	약력
김범준	위원장	사외이사	유	現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조경엽	위원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	무	現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장 민	위원	비상임이사	о́ П	現 ㈜케이티 재무실장



####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범준	사외	위원장	/24 02 20	′26 년
100 T	시되	ਸਦਿਲ	′24.03.29	정기주주총회일
ㅈ 겨 여	1101	01 01	/22.02.21	′25 년
조경엽	사외	위원	′23.03.31	정기주주총회일
⊼ŀ □I	비사이	01 01	/24.02.20	′26 년
장 민	비상임	위원	′24.03.29	정기주주총회일

#### 다. 권한과 책임

#### 1) 총괄

「보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상위원회는 지배구조법에서 임원으로 정의하는 업무집행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고 지급방식을 심의·의결합니다.

2024 년 1 월 30 일 개최한 제 1 차 보상위원회, 2024 년 3 월 29 일 개최한 제 3 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보상위원회는 2024 년 3 월 5 일 개최한 제 2 차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공시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의결하였으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당사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보상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상위원회는 2024 년 1월 30일 개최한 제 1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성과보상 이연기간 및 비중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개최한 제 5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성과보상체계에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한 기여도 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이 기업의 장기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 의결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 4 조(소집), 제 5 조(의결사항 등), 제 6 조(의결방법)에 의거하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보상위원회는 2024 년 3월 29일 개최한 제 3차, 2024년 5월 30일 개최한 제 4차, 2024년 11월 14일 개최한 제 5차 보상위원회에서 당사 임원 보상체계가 회사 재무상황 대비 적정하며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원성과급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지급형태 및 방식, 이연지급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보상위원회는 2024 년 3 월 5 일 개최한 제 2 차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회사 내 모든 사업부 및 지점에 적용됩니다.

② 해외: 해당사항 없습니다.

####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보상위원회 규정」제 5 조(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보수위원회의결 대상으로 규정한 임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 1월 30일 개최한 제1차보상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로 정한 대표이사, 경영/전문임원, 경영임원이 아닌업무집행책임자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실근무자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당사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및 단기 실적에 따른 발생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 (2024 년 12 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대표이사 사장 1명, 부사장 2명,
임원	22 명 <sup>1)</sup>	전무 4명, 상무 12명,
		본부장 2명, 그룹장 1명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주 1) 해당년도 중 6 개월 미만 근무 임원은 제외



#### 라. 보상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3 일 전에 각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2024 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 2) 활동내역 개요

2024 년에는 총 5회의 보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 1 차 보상위원회: 2024.01.30(화) 15:35~15:55 (안건통지일: 01.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1. 이사 성명	서동규	조경엽	김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임원 성과보상 이연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 년 임원 보수(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임원 성과보수의 60%는 즉시지급, 40%는 분할(30:30:40) 이연지급 승인



나)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정의되는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고정보수 및 변동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승인

#### 나) 제 2 차 보상위원회 : 2024.03.05(화) 14:40~14:50 (안건통지일: 02.2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1. 이사 성명	서동규	조경엽	김영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3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b>+</b> L	<b>+</b> L	<b>+</b> L	71.74
작성 및 공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2023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승인

#### 다) 제 3 차 보상위원회: 2024.03.29(금) 17:20~17:40 (안건통지일: 03.26)

항목	0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김범준	조경엽	장 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 년도 성과지표(KPI) 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3 년도 임원 성과급 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보상위원회 김범준 위원장 선임 승인

나) 2023 년도 회사 경영평가 지표(계량/비계량 등)에 대한 평가 승인

다) 2023 년도 회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원 성과보수 지급 승인



#### 라) 제 4 차 보상위원회: 2024.05.30(목) 14:00~14:20 (안건통지일: 05.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김범준	조경엽	장 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 년도 성과지표(KPI)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가) 2024 년도 회사 경영평가 지표(계량/비계량 등)에 대한 설정 승인

#### 마) 제 5 차 보상위원회 : 2024.11.14(목) 11:00~11:15 (안건통지일: 11.11)

항목	Ol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김범준	조경엽	장 민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 년 준법감시, 위험관리,	ᆉᅛᅥ	ᆉᅛ	찬성	가결
소비자보호그룹장 성과지표(안)	찬성 	찬성	신경	기열
나. 2024 년 임원 성과보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

#### [의결안건]

- 가) 2024 년도 준법감시, 위험관리, 소비자보호그룹장에 대한 회사 경영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별도 성과지표 설정 승인
- 나) 2024 년도 회사 경영평가 및 별도 성과지표 등에 의한 성과보상체계 승인



#### 4) 평가

당사는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매년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주주총회 20 일 전까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위원회 효율적 진행,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이 있으며 2024년 평가에서 보상위원회는 평균득점 4.89점으로 우수(S)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는 2025년도 운영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2. 보수체계

#### 가. 주요사항

####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가) 회사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결과지표로 매출, 영업이익, 매입액을 사용하며, 과정지표로 전략과제 이행도(보유역량기반 내실 있는 성장 추진, 그룹금융 본연의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를 사용하여성과를 측정합니다.

####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 개인에 대하여 회사 경영평가 점수와 담당·소속 조직성과(KPI 평가지표), 비계량 기여도 평가(기업가치 제고노력, 리더십, 핵심가치 이행노력 등)로 성과를 측정합니다.

#### 다) 회사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 방법

성과측정 지표를 통하여 산출된 회사 경영평가 점수와 개인 평가등급을 성과급 지급률에 반영하여 최종 지급규모를 확정함으로써,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임원 성과급 지급금액 중 60%는 1 차년도에 현금으로 즉시지급하며, 40%는 현금으로 2 차년도부터 3 년간 분할하여 이연지급합니다.

####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급 중 이연된 보수액은 3 년에 걸쳐 이연지급하며, 이연지급 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회사 사업 성과에 연동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 의거하여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그룹장은 성과보상 이연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가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인의 경우 성과보상은 이연지급되나 회사 사업 성과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조정합니다.

####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산출 시 결정된 이연 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사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급과 직책급은 고정보수로 분류하고, 업적 및 역량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변동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급의 0~200% 범위 내로 성과급을 설정하여 차등 지급하며, 경영임원이 아닌 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개인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기준 연봉의 0~45% 범위 내로 성과급을 설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주식으로의 보상이 어려워 성과보수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경영/전문임원, 경영임원이 아닌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성과급의 40%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규모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평가결과에 따른 연봉 조정 및 성과급 차등 지급 방식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정량적, 정성적 업무성과 및 역량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와 노사합의를 반영한 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임금결정과정 및 임금항목별 지불의 근거를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보상위원회 규정」제 7 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4 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보상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에 대하여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수 있는 개인적 위험 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자산총액이 5조원을 상회함에 따라 지배구조법 이행을 강화하고자 2024년 1월 30일 개최한 제 1 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성과보상 이연지급(안)을 의결하였으며, 2024년 3월 29일 개최한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최초 적용하여 2023년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 년 11월 14일 개최한 제 5차 보상위원회에서 기존 계량지표 외 비계량 기여도 평가(기업가치 제고노력, 리더십, 핵심가치 이행노력 등)를 강화하여 장기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 나. 보수 세부사항

####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명, 억원)

	임직원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sup>2)</sup> (B)	OI지의스 3)	임직원
구분	보수총액1)		비율	임직원수 <sup>3)</sup>	
	(A)		(A/B)	(C)	평균보수(A/C)
전년도	1 020	1 012	56.8%	908	1.13
(2023 년)	1,030	1,813	30.0%	900	1.15
당해년도	991	1 050	02.60/	001	1 1 2
(2024 년)	991	1,059	93.6%	881	1.13

- 주 1)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기재
- 주 2)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t-1 기의 금액을 기재 (당해년도가 2024 년인 경우 2023 년말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기재)
- 주 3) 해당연도 말 재직 임직원 수 기준

####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직원			
ā	구분	대표 이사	기타 이사 <sup>2)</sup> 미등기		기타 업무집행 책임자 <sup>3)</sup>	관리자	사원
전년도	보수총액 1)	4.95	2.3	50.5	5.3	148.0	818.6
(2023 년)	성과보수액	1.7	-	15.0	0.8	23.0	121.4
당해년도	보수총액 1)	4.1	2.4	42.2	9.0	143.5	790.0



(2024년) 성과보수액 0.6	- 5	.5 1.1	20.0	102.1	
-------------------	-----	--------	------	-------	--

주 1) '(1) 임직원 총보수' 작성 기준과 동일

주 2)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주 3) 경영임원이 아닌 업무집행책임자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76	<b>人ユTL人 1</b> )	기보그 2)	성고	<b> 보수액</b>
	구분	수급자수 1)	기본급 <sup>2)</sup>		이연지급 대상
	임원	24	41.4	17.6	7.0
전년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1	-	-
(2023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임원	22	43.6	26.0	10.4
다체네트	금융투자				
당해년도	업무담당자	_	1	-	-
(2024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_	_	-	_

주 1) 해당년도 중 6 개월 이상 임원 등을 기준으로 기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제외, 이하 동일)

주 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여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구분			성과보수액					
	<b>丁正</b>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임원	17.6	17.6	-	-	-		
전년도	금융투자							
(2023 년)	업무담당자	-	_	_	-	-		
	기타 성과보수	-	-	-	-	-		



	이연지급 대상자					
다쉐네드	임원	26.0	26.0	-	-	-
	금융투자					
당해년도	업무담당자	-	_	-	<del>-</del>	_
(2024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76		이연보수액 1)		
	구분		지급확정 2)	지급미확정 2)	
	임원	7.0	7.0	-	
저녀드	금융투자				
전년도 (2022년)	업무담당자	-	_	-	
(2023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_	-	
	임원	10.4	10.4		
다쉐네트	금융투자				
당해년도	업무담당자	-	_	-	
(2024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del>-</del>	_	_	

주 1) 이연보수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기재

##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그ㅂ	이연보수액				
	구분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저녀드	임원	7.0	7.0	-	-	_
전년도 (2023 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1	_	_	_	_
	임원	10.4	10.4	-	-	-
	금융투자					
당해년도	업무담당자	<del>-</del>	-	-	-	-
(2024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_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76			이연보	수액 <sup>1)</sup>		
	구분		t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임원	7.0	7.0	1	ı	-	-
전년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2023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
	임원	17.4	10.4	7.0	ı	-	-
당해년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_	_	_	-	-	-
(2024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

#### 주 1)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4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24년(t기) 발생분, 2023년(t-1기) 발생분, 2022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당사는 사업연도 기준 2023년 성과급부터 이연지급 대상

## 6) 이연보수의 조정

그브		0	연보수액 축소	<b>액</b> 1)	직·간접적 조정
	<b>十</b> 世	직접 조정 <sup>2)</sup> 간접 조정 <sup>3)</sup>			노출 금액 <sup>4)</sup>
전년도	임원	-	-	-	7.0



(2023 년)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ı	-	ı	1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임원	1	-	-	17.4
다쉐네트	금융투자				
당해년도	업무담당자	-	-	<del>-</del>	<del>-</del>
(2024 년)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_	-	_

-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 중 직접(삭감, 환수 등), 간접(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 주 2) 이연보상이 직접(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 주 3) 이연보상이 간접(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 주 4) 잠재적으로 직접, 간접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	1 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3 년)	임원	3	1.3	0.7
	금융투자	-	-	-
	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	-	-
	이연지급 대상자			
당해년도 (2024 년)	임원	5	3.7	2.4
	금융투자	-	-	-
	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	-	-
	이연지급 대상자			

주 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 첨부: 1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비씨카드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BC Card Co., Ltd.로 표시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3.25 본조 개정)

- 1.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 2.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 2 의 2. 선불카드의 판매
- 3.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
-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대행업무
- 5.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및 지급의 보증업무
- 6.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 및 지급의 보증업무
- 6 의 2. 신기술사업금융업무 (2017.3.30 본호 신설)
- 6 의 3. 제 6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대행 업무 (2018.3.28 본호 신설)
- 7. 물품 및 용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업무
- 8.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업무
- 8의 2. 카드(전자지급수단)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 9. 신용카드 이외의 기타 카드발급 업무
- 10 채권의 발행 또는 차입에 의한 자금의 조달업무
- 11. 보험대리점 업무
- 12. 일반여행 업무
- 13. 통신판매 업무



- 14. 인터넷 사업
- 15.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업무
- 16. 광고대행 업무
- 17.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업무
- 18. 업무와 관련된 교육(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간행물 및 도서출판(2013.9.13. 본호 신설)
- 19.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업 (2013.9.13. 본호 신설)
- 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20.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설정. 다만, 특정 금융상품과 관련된 디자인권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디자인권 등은 제외 (2013.9.13. 본호 신설)
- 21.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 (2013.9.13. 본호 신설)
- 22. 부동산 임대업 (2016.3.30 본호 개정)
- 23. 전 각 호의 부대 및 관련업무
- 24.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업무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2013.9.13. 본호 개정)

**제 3 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이사회의 결의로써 각 지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또는 대리점 및 현지법인을 둘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ccar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백만주로 한다.



**제 6 조(1 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 1 주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일십오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발행하며,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2017.3.30 본조 개정)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의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4.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회사가 제 2 항 제 4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④ 제 2 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격과 납입기일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5. 기타 법령상 규정된 사항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할 경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021.3.25 본조 신설)
- 제 10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의결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하는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8) (2024.3.29 본항 삭제)



#### **제 10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3.29 본조 삭제)

제 10 조의 3(동등배당) 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정한다. (2024.3.29 본조 신설)

제 11 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 배정) ① 전 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유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써 종업원에게 청약직전 12 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한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특별 배정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주식배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 12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017.3.30 본조 개정)

**제 13 조(질권의 등록 등)** (2017.3.30 본조 삭제)

**제 14 조(주권의 재교부)** (2017.3.30 본조 삭제)



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한다. (2017.3.30 본조 개정)

**제 16 조(수수료)** (2017.3.30 본조 삭제)

제 17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2주간 전에 미리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 3. 27 본조 신설/ 2020.3.25 본조 개정)

#### 제 3 장 주주총회

제 18 조(주주총회의 소집) 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만료일로부터 3월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29 조를 준용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지는 본사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한다.

제 19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29 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0 조(정족수 및 의결)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1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1 조의 2(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0.3.25 본조 개정)

제 22 조(의사록의 작성 보존)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이사회

**제 23 조(이사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임원으로 3 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사외이사의 수는 3 인 이상으로 하고,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013.2.26 본항 신설) (2017.3.30 개정)(2023.3.31 본항 개정)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017.3.30 개정/2020.3.25 본조 개정) (2023.3.31 본조 개정)



- 제 25 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총 재임기간은 6년 또는 이 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 1 항 단서의 경우 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 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
- ③ 제 1 항의 경우 그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015.3.23 개정)
- 제 26 조(이사의 보선) ① 임기중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23 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정관 제 23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013.2.26 본항 신설)
- ③ 보결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보결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27 조(대표이사의 선임, 자문역 등)**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인 사장 1 인을 선임한다.
- ② 사장은 회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역을 둘 수 있다.

제 28 조(경영임원) ① 이 회사는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 회사의 분장업무를 집행한다.
- ③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2016.8.11 본항신설)
- ④ 경영임원의 임용, 역할, 보수 및 퇴직 등에 대하여는 이 회사의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9 조(권한의 대행)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5.3.23 개정)(2023.3.31 본조 개정)



- 제 30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2.26 본조 개정)

#### 제 31 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3.3.31 본항 개정)
- ③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3.3.31 본항 개정)
- 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시 이사회 의장에게 그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023.3.31 본항 개정)
-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이외에 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 ⑦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2013.2.26 본조개정)

## **제 31 조의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0.3.25 본조 개정)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
  - 가.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영업보고서의 승인
  - 나. 정관의 변경
  - 다. 해산, 영업양도·양수,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라.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마.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2018.3.28 본목 개정)
  - 바.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주식 및 납입자본금의 변경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4. 다음 각 목의 중요 사규의 제·개정 및 폐지 (2023.3.31 본호 개정)
  - 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 나. 이사회 규정
  - 다. 감사위원회 규정
  - 라. 보상위원회 규정
  - 마. 경영위원회 규정
  - 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아.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2025.3.28 본목 추가)
  - 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 차.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카. 전문임원관리규정
  - 타.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규정 (2019.3.12 본목 추가)
- 5. 연도 경영계획 확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 (2017.3.30 개정)
- 7.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 8.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9.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2019.3.27 본호 추가)
- 10. 1 건당 20 억원(연간 예산계획 반영 여부 무관.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산 또는 부동산의 구입, 임대차, 처분. 단, 영업점의 설치가 결의된 지역의 사무실 임차와 기존 영업점의 임차보증금 인상결정 등은 제외
- 11. 1 건당 20 억원을 초과하는 연구 용역 및 자문서비스 계약의 체결
- 12. 본부급 이상 조직의 신설 및 폐지
- 13. 정관 제 29 조에 의한 대표이사 직무대행 순위
- 1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5. 경영임원의 구분, 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16. 자본출자, 주식취득·처분, 보증 및 담보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자본출자, 주식취득 및 처분
  - 나. 가목 외의 사항으로서 100 억원 이상의 자본출자, 주식취득 및 처분다. 1 건당 20 억원을 초과하는 보증 및 담보제공



- 17. 사채의 연간 발행한도
- 18.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가. <삭제> (2022.3.14 본목 삭제)
  - 나. 은행 한도대출의 차입한도 (2019.3.12 본목 신설)
  - 다. 1건당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이사회가 승인한 한도내의 사채발행, 은행 한도대출의 차입실행 및 만기 1년 이내 운전자본 조달은 대표이사에게 위임(2022.3.14 본목 개정)
- 19. 상법 제 398 조에서 정하는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20.3 억원 이상의 출연 및 기부
- 2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해외 연락사무소, 대리점 및 현지법인의 설치
- 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동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2019.3.27 본호 개정)
- 24. 준법감시인의 임명 또는 면직, 내부통제규정, 위험관리기준 등의 제.개정 및 폐지 (2019.3.27 본호 개정)
- 2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25.3.28 본호 신설)
- 26.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법무지원 제도 도입 및 변경
- 27.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의 임면
- 28. 비씨카드 업무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9. 법령,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와 감독기관의 인가, 승인절차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2016.8.11 본조 신설)

제 32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 33 조(의사록의 작성 보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3.2.26 본조 개정)



제 34 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 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2017.3.30 개정) (2023.3.31 본항 개정)

- 1. 감사위원회
- 2. 보상위원회(2015.3.23 신설)
- 3. 리스크관리위원회(2015.3.23 신설)
-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5. 내부통제위원회(2025.3.28 신설)
- 6. 경영위원회
- ② 제 1 항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3.2.26 본항 개정)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1 조, 제 32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3.3.26. 본항 신설)

**제 35 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2018.3.28 본항 개정)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018.3.28 본항 개정/2020.3.25 본항 개정)

####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 36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각 위원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016.8.11 본항 신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013.2.26 본조 개정)

제 37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23.3.31 본항 개정)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3.3.31 본항 개정)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⑦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2013.2.26 본조 개정)

제 38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3.2.26 본조 신설)

#### 제 6 장 계 산

제 39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하고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한다.

제 40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3.25 본조 개정)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4. 연결재무제표
- 5. 전 각 호의 부속명세서
- 6. 영업보고서 (2013.2.26 본조 개정)



- 제 41 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전조에 게기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주주와 이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전 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42 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대표이사는 제 40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전 항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3 조(이익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 44 조(주주배당금)**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 **제 45 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024.3.29 본항 개정)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3.29 본항 개정)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삭제> (2024.3.29 본항 삭제)

제 46 조(배당금의 지급시기) ① 이 회사는 제 44 조 및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 42 조 제 1 항의 승인 또는 제 45 조 제 2 항의 이사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 42 조 제 1 항의 주주총회 또는 제 45 조 제 2 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부 칙(2015. 3. 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등)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 3. 3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8. 1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등)** 제2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 3. 3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3. 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3. 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3. 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제 35 조 제 2 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개정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1. 3. 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3. 2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3. 3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 년 3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3. 2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 3. 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 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2

# 이사회 규정

##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023.3.16 본조 개정)

제 3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 조(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하고 그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중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정한다. (2023.3.16 본항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2023.3.16 본항 개정)
- ③ <삭제> (2018.3.12 본항 삭제)
- ④ <삭제> (2018.3.12 본항 삭제)
- ⑤ <삭제> (2023.3.16 본항 삭제)

#### 제2장 회 의

- 제 5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의거 이사회 의장이소집한다. (2023.3.16 본항 개정)
- ②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6 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
  - 가.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영업보고서의 승인
  - 나. 정관의 변경
  - 다. 해산, 영업양도·양수,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라.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마.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2018.3.12 본목 개정)
  - 바.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주식 및 납입자본금의 변경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4. 다음 각 목의 중요 사규의 제·개정 및 폐지(2023.3.16 본호 개정)
  - 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 나. 이사회 규정
  - 다. 감사위원회 규정
  - 라. 보상위원회 규정
  - 마. 경영위원회 규정
  - 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아.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2025.3.12 본목 추가)
  - 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 차.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카. 전문임원관리규정
  - 타.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규정 (2019.3.12 본목 추가)
- 5. 연도 경영계획 확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
- 7.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 8.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9.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2019.3.12 본호 추가)
- 10. 1건당 20억원(연간 예산계획 반영 여부 무관.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산·부동산의 구입, 임대차, 처분. 단, 영업점의 설치가 결의된 지역의 사무실 임차와 기존 영업점의 임차보증금 인상결정 등은 제외
- 11. 1건당 20억원을 초과하는 연구 용역 및 자문서비스 계약의 체결



- 12. 본부급 이상 조직의 신설 및 폐지
- 13. 정관 제29조에 의한 대표이사 직무대행 순위
- 1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5. 삭제 (2024.3.5 본호 삭제)
- 16. 자본출자, 주식취득·처분, 보증 및 담보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자본출자, 주식취득 및 처분
  - 나. 가목 외의 사항으로서 100억원 이상의 자본출자, 주식취득 및 처분다. 1건당 2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 및 담보제공
- 17. 사채의 연간 발행한도
- 18.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가. <삭제 > (2022.3.14 본목 삭제)
  - 나. 은행 한도대출의 차입한도 (2019.3.12 본목 신설)
  - 다. 1건당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이사회가 승인한 한도내의 사채발행, 은행 한도대출의 차입실행 및 만기 1년 이내 운전자본 조달은 대표이사에게 위임(2022.3.14 본목 개정)
- 19. 상법 제398조에서 정하는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20. 3억원 이상의 출연 및 기부
- 2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해외 연락사무소, 대리점 및 현지법인의 설치
- 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동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2019.3.12 본호 개정)
- 24. 준법감시인의 임명 또는 면직, 내부통제규정, 위험관리기준 등의 제.개정 및 폐지 (2019.3.12 본호 개정)
- 2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25.3.12 본호 신설)
- 26.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법무지원 제도 도입 및 변경 (2015.8.20. 본호 신설)
- 27.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의 임면
- 28. 비씨카드 업무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9. 법령,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와 감독기관의 인가, 승인절차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분기 결산 및 주요 경영실적
-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4. 전문임원 운영현황
- 5.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2017. 8. 10. 본호 신설)
-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 7 조(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고,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8 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부의사항 중 특정 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다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17.3.30 개정) (2023.3.16 본항 개정)
  - 1. 감사위원회
  - 2. 보상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5. 내부통제위원회 (2025.3.12 신설)
  - 6. 경영위원회
- ② <삭제> (2019.3.12 본항 삭제)
-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 ④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의결한 사항을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이사회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20.3.2 개정)



**제 9 조(의사록작성, 보존)**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외이사

- 제 10 조(사외이사의 선임) ①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17.3.30 개정) (2023.3.16 본항개정)
- ②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 제 11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 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 12 조(임원배상책임보험) ①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이 배상책임액의 20% 이상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 억원으로 한다.

제 13 조(사외이사의 보고 의무) <삭제 > (2018.3.12 본조 삭제)

제 14 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3.3.16 본항 개정)



② 이사회는 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결의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결의할 수 있다. (2023.3.16 본항 개정)

제 15 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5 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7 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8 년 2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8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9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9 년 9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13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 년 3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 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15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 년 10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제 16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17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제 18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19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3. 8)

이 규정은 2012 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8. 6)

이 규정은 2012 년 8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7. )

이 규정은 2013년 3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6.)

이 규정은 2014년 2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폐지) 회사의 "성과보상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대표이사 직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 6 조 제 1 항 13 호의 개정 규정에 도 불구하고 동 조항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하고, 동 조항의 시행 전에 대표이사 유고 시 재무담당 경영임원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하고, 재무담당 경영임원 유고 시 경영임원 중에서 직급 순으로, 직급이 동일한 경우 해당 직급에서의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2015. 8. 20.)

이 규정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28.)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30.)

이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0.)

이 규정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2.)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2.)

이 규정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4.)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16.)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5.)

이 규정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2.)

이 규정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3

# 지배구조 내부규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 14조에 따라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고객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 또는 "이 규범"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된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배구조법에 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 제3조(제정 및 변경 등) ① 지배구조내부규범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제 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2025.3.12 본조 개정)
- ② 회사는 이 규범을 제정·변경할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 **제4조(구성기준)** ①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5조(이사회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사회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 **제6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 하는 자
- 2. 기타 이사회가 이사로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기타 이사회가 사외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 **제8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 의결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을 따른다.
- ③ 이사회 보고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대표이사에게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 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전략, 금융, 회



- 계, 위험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한다.

####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11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 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총 재임기간은 6년 또는 이 회사 및 계 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이사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하며 제2항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임기를 연장한다.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제12조(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의 만료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 또는 정관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 될 때
- 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
- ② 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보궐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거나 업무수행상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제13조(이사회 소집절차) ①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이 아닌 다른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소집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E-mail 등)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이사회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15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 ② 제1항의 운영실적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6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 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결의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결의할 수 있다.

####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 구성 및 기능

제17조(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1. 감사위원회
- 2. 보상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5. 내부통제위원회(2025.3.12 신설)
- 6. 경영위원회
- ②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에 관한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8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재적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고,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의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은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⑤ 감사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구성이 제1항에 따른 구성요 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일까지 위원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보상위원회) ① 보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리스 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보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하며 독립적으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담당한다.
- ④ 보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은 보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제20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 사를 과반수로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에서 위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④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2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선임함에 있어 그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22조(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는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은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025.3.12 본조 신설)

제23조(경영위원회) ① 경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경영위원회는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④ 경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은 경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제2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E-mail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 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5조(위원회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위원회의 의결권 행사방법은 제14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26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운영실적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 제27조(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라 함은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 제28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 ① 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②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 전문금융업협회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 제29조(임원 등의 자격요건) ①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 정한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되, 관련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금융관련 법규 및 금융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 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서 지배구조법 제28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 가 된 후 동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 **제30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집 행하고 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따라 회사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 ② 임원은 상법 등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부여하는 업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
- ③ 준법감시인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 ⑤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담당한다.
  -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본 규범 제11조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두며,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며 재선임될 수 있다.
- ③ 기타 임원은 관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32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본 규범 제12조에 따른다.

- ② 임원(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의 만기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인사관계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 4. 대표이사가 해임하는 경우(선임절차에 준하여 퇴직처리)
- ③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의 만기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인사관계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 4. 이사회에서 직무 해임이 의결된 경우

####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3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집합 또는 사이버 과정 등 필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원 중 선발된 자에 한하여 외부위탁 파견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연수로 제1항의 필수 연수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



여 사내 또는 사외 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제35조(임원 성과평가) ① 이사인 임원의 평가지표는 보상위원회 의결에 의해 정하고, 이사가 아닌 임원의 평가지표는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② 이사인 임원에 대한 평가권은 보상위원회에 있으며, 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한 평가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 ③ 임원에 대한 평가는 년 1회 실시하며, 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3년 이상 이연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연지급 비율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제37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을 대상으로 각종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한다.
- 제38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사회는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9조(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① 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도래로 인한 퇴임, 사임, 유고 등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퇴임 시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사임, 유고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개시한다.
- ③ 회사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40조(비상시 경영승계 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유고 등의 상황 발생시 경영승계계획을 반영한 비상계획을 실행하고 빠른 시일 이내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한다.
- ② 회사는 최고경영자 유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정관, 이사회 등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대행 순위를 결정한다.
- ③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 결을 받아 결정한다.
- 제4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는 이사회 담당부서로 한다.
-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3. 그 밖에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 ③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2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후보추 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제4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자격검증 및 관리 방법) ① 임원후보추천위원 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한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 제4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 제4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최초 선임시 1년 이상으로 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임원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 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4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비씨카드(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임원후보추천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 경영승계 를 위한 이사회 지원
- 2.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자질 등 자격요건 의 설정
- 3. 임원 후보의 추천
- 4. 임원 후보자 발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 5.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 ② 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임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고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의 순서로 위원장을 대행하되, 지정한 자



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
-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E-Mail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의결사항 통보)** 위원회는 임원 후보추천 관련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 의결은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사록)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5

# 감사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 2.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 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 방안 제시
- 3. (삭제)
- 4.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5. 외부감사인 선임
- 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7.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8.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9.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5 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 2. 감사결과 및 그 조치 내역
  - 3. 그밖에 감사위원회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제2장 구 성

**제 8 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1.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위원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 인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 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0 조(위원회의 권한위임)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일상감사사항 등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감사부서장에 위임된 사항은 내부감사부서장이 전결처리 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 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④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내부감사부서장이 공람한다.

#### 제3장 회 의



- 제 11 조(회의의 종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제 12 조(소집절차)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3 조(결의 및 심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14조 제2항의 심의사항은 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제 14 조(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결의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사. (삭제)
- 아.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라. 외부감사인의 선임
  - 마.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 바.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 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4. 기타
  -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사항

-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준법감시인 면직에 대한 사전 심의
  - 라. (삭제)
  - 마. (삭제)
  - 바.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5 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6 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감사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 제4장 감사 및 보고

- 제 17 조(내부감사부서장에 대한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감사부서장에게 위임하며, 내부감사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3.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 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18 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내부감사부서장은 제17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 19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감사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내부 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이하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제 21 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2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의 위원은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2. 위원회의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3.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4. 간사는 리스크관리담당 부서장 또는 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호 개정 2023.09.22.)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③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의 안건별로 임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차상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 ⑤ 내부감사부서장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항 개정 2023.09.22.)
-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의 준비, 의사록 작성 및 보고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 4조(기 능)** ① 위원회는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리스크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두어 리스크 관리전략에 따른 세부정책의 집행을 보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소 집)** ①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 및 내부감사부서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조(부의 및 보고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또는 심의하여야 한다.

- 1. 의결사항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개정 2021.04.29.)
  - (2)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개정 2021.04.29.)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신설 2021.04.29.)
  -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4.29.)
  -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4.29.)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4.29.)
  - (8) 동일 차주 또는 투자 대상에 1,000 억 이상 실행·매입되는 여신·대체투자 또는 매출채권(어음·대출자산 등) 양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2.11.) (개정 2023.09.22.)
  - (9) 국외 새로운 유형의 대체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2.11.)
  - (10) 기업여신·대체투자 심사체계의 제정 및 폐지 (개정 2022.02.11.) (신설 2021.04.29.)

#### 2. 심의사항

- (1)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사업리스크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4.29.)
- (2)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자본출자, 주식취득·처분, 보증 및 담보제공, 사채발행,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17)



- (3) 기타 위원장 또는 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04.29.)
  - 1. 전사리스크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호 개정 2021.04.29.)
  - 2.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사항 (호 신설 2021.04.29.)
  - 3. 기업여신·대체투자 심사체계의 개정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2.02.11.)
  -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신설 2021.04.29.)

제 7조(의결·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심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항신설 2023.09.22.)

제 8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효력) 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내용에 반하여 해당 안건의 전결권자가 의사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의사록) 위원회의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단, 의결 안건의 경우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하는 의사를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한다. (조 개정 2021.04.29.)

제 10조(보고)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1조(규정의 개정) 관계 법령등의 개정 또는 회사 내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단, 규정이 정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내용 조정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 3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 4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 5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 6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 7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순 명칭변경 및 내용조정)
- **제 8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 9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 10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 1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 1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보상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17.3.30 개정)(23.3.16 개정)

- ②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 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임시 이사회가 정하며,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2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3일 전에 각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 제 1항 제 1호에서 규정한 '임원'의 보수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4.1.30 신설)



- 2. 위 제 1 호의 대상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4.1.30 개정)
- 3.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24.1.30 신설)
- 4.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023.3.16 신설)
- 5. 그 밖에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 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9 조(서류 보존)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활동내역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4.1.30 개정)

#### 부 칙(2015. 3. 23)

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3. 30)

이 규정 제2조 1항 개정, 제5조 1항 2호 신설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 부 칙(2017. 4. 17)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16)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30)

이 규정은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 선임일이 빠른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까지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다른 법령 및 내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6.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평가) 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의사록의 작성, 보존) ①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주관부서, 간사) 준법감시업무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주관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준법감시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야 한다. 단, 법령 및 내규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직제 변경, 오탈자 수정, 단순 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전결로 하고 내부통제위원회에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3.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적용례)** 제6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경영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구성)** ①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본 항 개정 2011.10.7, 2012. 8. 1, 2013.2.12, 2014.2.6)

- ② 경영위원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감사위원은 경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 항 개정 2023.3.16)
- ④ 경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경영임원 또는 직원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 항 개정 2012. 03.28. 정관개정 반영 자구수정)

**제 4 조 (소집)** ① 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항 개정 2013.2.12)

② 경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본 항 개정 2023.3.16)

제 5 조 (부의사항) ① 경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지배인의 해임 및 선임
-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6 조 (보고사항) 회사의 경영진이 추진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7 조 (의결방법)** ① 경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본 항 개정 2011. 05.11, 2014.2.6)
- ② 경영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위원은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 8 조 (의사록) ① 경영위원회의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본 항 개정 2023.3.16)
- ② 제①항의 의사록은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경영위원회 담당부서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 항 개정 2013.2.12)
- 제 9 조 (소속기구) 경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경영위원회 담당본부장이되며, 회의의 소집, 사전 준비 및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본 조 개정 2011.5.11, 2013.2.12)
- **제 10 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8. 1)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2. 1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2. 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3. 1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하 '최고경영자'라 한다)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최고경영자 유고시 경영공백을 해소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 단순한 용어변경 등 중대한 내용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장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 3 장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등

**제5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명시된 금융회사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 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제6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① 후보군 관리업무는 이사회 소관 업무로 하며,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을 실시한다.

- ② 다만,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지원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지원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경영승계 절차

제7조 (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 임기 중도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이사회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제5조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7조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9조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



행이 불가한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 발생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7조 제2항, 제8조에 준해서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임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야 한다.

#### 부칙(2023.3.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